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78호
2024. 5. 20.(월)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9209호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제9210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921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제9212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9
제9213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9214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9215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제9216호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9217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제9218호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21
제9219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9220호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제9221호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9222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9223호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9224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제9225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제9226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제9227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제9228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제9229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제9230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9231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제9232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제9233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제9234호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제9235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45

제9236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제923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제9238호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제9239호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제9240호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제924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9242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9243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제9244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제924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제9246호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1
제9247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제9248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75
제9249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제9250호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제9251호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6
제9252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제9253호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88
제9254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제9255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90
제9256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제9257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제9258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4
제9259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5
제9260호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97
제9261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제9262호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제9263호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9264호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8
제9265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제9266호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3
제9267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4
제9268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115
제9269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41

제9270호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142
제9271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0
제9272호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53
제9273호	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7
제9274호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162
제9275호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5
제9276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66
제9277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67
제9278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68
제9279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73
제9280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5
제9281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77
제9282호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8
제9283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0
제9284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83
제9285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85
제9286호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7
제9287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0
제9288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2
제928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95
제929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3

[규 칙]

제4629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6
제463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209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4-19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10
제2024-191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24

자치법규 등**[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9209호****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사용료·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시장은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저출생 문제가 점차 심각화 됨에 따라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임신부에 대해 예우를 다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나. "임산부"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 다.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신부에 대하여 입장료 감면 등 혜택을 규정함.(제5조)
- 라. 임신부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10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시장 등에 대한 현황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등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통시장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시장의 책무,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제2조의2조 신설)
- 나.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을 신설함.
(제3조의2 신설)
- 다. 전통시장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추가함.
(제14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21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청각장애인의 경우 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노크 소리를듣지 못하는 장애로 인하여 공공 시설에서조차 인간의 필수적인 기본권리 및 정당한 이용편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청각장애인의 공공시설에서의 편의증진 장비 및 기기의 설치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기기의 설치를 규정함. (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12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설립하였으나,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9213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임시보호”란 유기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 치료 등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분양·기증전에 일시적으로 가정 등에서 보호하는 자원봉사를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유기동물의 임시보호 등)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임시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시보호 기간 동안 접종 및 치료 등을 지원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자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지원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재 서울특별시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유기동물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기동물의 경우 질병 등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임시보호자가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정으로 입양 전 자원봉사 가정에서 보호받게 되는 유기동물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임시보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임시보호" 정의 규정 신설(제2조제15호)
- 나. 유기동물의 임시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의2제1항)
- 다. 임시보호 동물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14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최고기온이”를 “최고 체감온도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구청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폭염저감시설(제2조제4호 관련)

폭염저감시설	정 의
지붕 차열도장 (쿨루프)	지붕 또는 옥상에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도료를 시공하여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안개형 냉각 또는 안개형 냉각수 시스템 (쿨링포그)	물을 안개처럼 분사하면서 미세 물분자의 기화를 이용하여 주위 온도를 낮추는 냉방장치를 말한다.
차열성 도로포장	배수성 아스콘 및 차열성 포장을 통하여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도로포장 방법을 말한다.
그늘막 및 그늘목	도로변과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의 설치하거나 및 나무를 심어 무더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도 나무그늘 만들기	여름철 도심 보행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나무터널과 같이 나무를 이용해 그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수경시설	분수나 호수·인공폭포 등이나, 벽면분수·생태 연못 등 물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
기타 시설	위 시설물 외에 여름철 도시의 온도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서 ‘폭염’은 공기의 온도만 고려한 “일 최고기온”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기상청은 폭염특보를 발령함에 있어 “일 최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기타 조례의 자구 수정 및 미비 사항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폭염의 정의 중에서 “일 최고기온”을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함.(제2조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215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서울특별시도	○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재난안전관리실장
		○ 차도관리(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도로사업소장
		○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 차도 및 보도(지하보도 포함)의 청소(낙하물을 포함하되 터널 · 지하차도 내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은 제외)	자치구청장
	자동차전용도로	○ 차도 및 보도 관리(청소 포함) ○ 녹지 및 가로수	재난안전관리실장
		○ 도로시설물	재난안전관리실장
도로부속물	공동구	○ 공동구	재난안전관리실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가로등 ·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재난안전관리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 ○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자치구청장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다리 · 중앙분리대 · 과속방지시설 · 미끄럼방지시설 · 충격흡수시설 · 낙석방지망 · 절개지 · 도로 옹벽 · 방음벽 · 맨홀 등)	○ 자동차전용도로(차도 및 보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재난안전관리실장
		○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도로부속물(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부속물 포함)	자치구청장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교통관리시설	지능형 교통체계	○ 교통정보의 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와 긴급 연락시설	도시교통실장
	버스전용 차로 단속 시스템	○ 버스전용차로(중앙 및 가로변) 유 · 무인 단속시스템	도시교통실장
	도로표지	○ 문안검토	도시교통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재난안전관리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교통안전시	신호기 · 안전표지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 서울특별시도의 노면표시	재난안전관리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사업소장

설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교통 안전 관련 도로 부속물	시선유도표지·시선유도봉·갈매기표지·도로반사경·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교통섬 등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재난안전관리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재난안전관리실장
		○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제외)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교통섬 제외,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	
		○ 서울특별시도(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교통섬	자치구청장
하 천 시 설	한강	○ 한강의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 (육)갑문의 구조물,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미래한강본부장
		○ (육)갑문의 문짝, 권양기 시설물, 통로청소, 수문개폐	자치구청장
	국가 및 지방 하천(한강 제외) · 국가 및 지방 하천 이외 하천	○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의 구조물,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 호안블록, 옹벽, 도수로, 우수토설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 수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 등 관련 시설 ○ 갑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통로청소·수문개폐 등 ○ 갑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진출로 시설 ○ 그 밖의 하천시설	자치구청장
하 수 도	공공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차집관거	○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하수관거	○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복개 구조물	하천복개구조물	○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도로사업소장 또는 자치구청장
		○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주 기능별 설치사용자

비 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계천 제외지(堤外地)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開口部) 수문 : 물순환안전국

나.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천변 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 재난안전관리실장

다. 하천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

라. <삭 제>

참고1) “차도”란 보·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층을 말함.

참고2) 도로부속물의 “절개지”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서 ‘폭염’은 공기의 온도만 고려한 “일 최고기온”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기상청은 폭염특보를 발령함에 있어 “일 최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기타 조례의 자구 수정 및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폭염의 정의 중에서 “일 최고기온”을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함.(제2조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216호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관리책임자는 건축물 안전위험 및 대수선에 따라 옥상녹화를 철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옥상녹화 조성 후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의 누수, 균열 등에 안전위험 사항에 대하여 옥상녹화를 철거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에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하여 옥상녹화 조성 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관리책임자는 건축물 안전위험 및 대수선 시 사업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 신설(제11조제5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17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 중 “뚝섬 자벌레(서울생각마루)” 를 “뚝섬 자벌레” 로 한다.

별표 2 제5호 중 상상마루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제목 중 “제24조” 를 “제21조” 로 하고, 제목 외 부분 중 100 ℓ 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상마루(뚝섬 자벌레 서울생각마루 3층) 운영이 2023년 8월 종료됨에 따라 이용료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 또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 중 100 ℓ 봉투 제작을 금지함에 따라 가격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근거 조항을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별표 1 제5호 중 서울생각마루 부분을 삭제함.
- 나. 별표 2 제5호 중 상상마루 기준 및 이용료를 삭제함.
- 다. 별표 4 한강공원 쓰레기규격봉투 가격 중 100 ℓ 부분을 삭제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218호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 및 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 (이하 “수경시설” 이라 한다)이란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수경시설의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경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이하 “설치·운영자” 라 한다)는 제1항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운영자 교육) ① 시장은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수경시설 수질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②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수질검사 결과공개) ① 수경시설 설치·운영자는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 등을 통해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안내판 등에 표시할 수질검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수경시설 운영자의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경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한 당월 말일까지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경시설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수경시설 및 수질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설치·운영자 또는 해당 자치구는 시장이 제1항의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정보 입력 등 시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수질검사 요청) ① 시민은 제5조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가 적기에 게시되지 않은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수질검사 결과 요청과 그에 따른 시장의 조치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임) 시장은 수경시설의 수질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관내 설치·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함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다. 시장이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수경시설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라.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가 수질검사 결과를 현장 이용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도록 함.(제5조)
- 마. 시장이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바. 시민이 수질검사 결과가 적기에 게시되지 않은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19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21조제2항 본문” 을 “제21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사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한차례” 를 “한 차례”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을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계인, 또는” 을 “관계인 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인,” 을 “관계인” 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관련경비” 를 “수당 및 여비”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간사가 되는 공무원의 담당 업무로 ‘산사태’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법」 및 「사방사업법」에 명시된 ‘사방’ 을 함께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간사가 되는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추가하고, 시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4조)
- 나. 용어를 정비함.(제5조, 제11조, 제1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20호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야생동물의 학대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제18조의2(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야생동물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4.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규칙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 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금지, 야생동물 학대 사실이 있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규정 등을 마련하여 야생동물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야생동물의 학대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9조의2)
- 나. 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18조의 2)

◆ 서울특별시조례 제9221호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시숲등의 경관 자원 조성·보전·활용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시장이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경관 자원의 조성·보전·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경관 자원’을 반영한 도시숲 정책이 추진 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숲 등의 경관 자원 조성·보전·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제6조제2항제8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222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조성 및 정비 계획”을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 이내에 세부계획”을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 및 진단조사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거나 진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로수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로수기본계획에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이 포함되도록 함.(제4조제1항제5호)
- 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제2항)
- 다.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시행 시 사전에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4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23호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동행매력 정원도시 서울」을 선포하고 정원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정원의 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도시화, 개인화, 초고령화 해결책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도시지역 아파트 주거문화 특성상 정원에서 누리는 여가문화활동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임.
- 이에 민간정원을 조성, 공개할 때 필요 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민간정원 조성 및 공개를 장려하여 시민들이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 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함.(제10조의 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24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음수대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음수대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현재 공원 및 학교 등에 설치된 아리수음수대의 경우 해당 기관 및 용역을 통해 음수대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이에 철저한 위생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아리수음수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음수대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과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함.(제9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25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상품권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참여 유도과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참여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제7조제3항)
- 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 기준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제7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26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를 “놀이환경 조성에 관하여”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안전한 가운데 자유롭게” 를 “자유롭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제5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을 “있도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5항) 중 “유지·관리” 를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시장은 도시공원의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책무가 있는바, 이에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의 정비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27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배터리의 자원순환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보급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환경친화적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있다”를 “있으며,”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배터리의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기후 위기와 탈탄소 전환을 위해 공공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전기차 상용화 시대 준비를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가치와 효율이 반영된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을 유도하는 보급 정책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경자동차 보급 정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제3조제2항)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공공/민간) 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우선 고려할 것을 명시함.(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28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소(小)생태계”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 나.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 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 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 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자연환경보전은 법 제3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를 “법 제2조제10호”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별하여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 중 생략되어 있는 ‘생태계’, ‘소생태계’,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보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태계’, ‘소생태계’,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규정 신설(제2조제1호, 제2호, 제9호)
나.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분(제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29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관리자”란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을 말한다.

제9조제2항 중 “운영자는”을 “운영자 및 관리자는”으로, “운영자가”를 “운영자 및 관리자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구조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리자인 자치구가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바, 자치구의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리자"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제2조제7호)
- 나. 관리자(시장에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가 시장의 승인없이 구조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에도 시장이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30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시장은 데이트폭력피해자의 적절한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사업
2.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
3. 법률상담 지원사업
4. 피해 관련 관계 기관에 긴급응급조치·보호 요청 지원
5. 데이트폭력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정책 개발 지원
6.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제2조제3호)
- 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제14조의4)

◆ 서울특별시조례 제9231 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으로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최소면적·노후도·접도조건을 포함한 지정 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책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 조정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역세권활성화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기준은 제8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그 외의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 완화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② 공공기여시설의 부지(부속토지를 포함한다)는 기부채납하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공공기여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중전의 제10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정책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업계획을 직접 입안 가능하도록 하여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 조례 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으로 인하여 시장 상황에 즉시 대응이 어렵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는바,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 사업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제7조)
- 나. 역세권활성화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기준을 운영기준에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위임(제9조)
- 다. 자구 수정(제5조, 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32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후”를 “후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조례의 취지와 다르게 교통요금 등을 조정하기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 이에 교통요금 등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여 시민의견 수렴을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통요금 등을 조정할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여 서울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제10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33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5.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1. 개별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외교·국방·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3.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성격·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청년친화위원회”를 “제3항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④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을 위원으로 추천하기”를 “지원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부서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3. 9. 22. 시행된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관련 청년참여 의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청년인재정보 수집·관리 부서의 인재추천 사무 범위를 일부 조정하여 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친화위원회의 정의를 삭제함.(제3조제7호)
- 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과 청년위촉이 곤란한 위원회의 범위를 심의·조정 하도록 함.(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 다. 서울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1/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3/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제10조제3항)
- 라. 서울시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3/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을 정할 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함.(제10조의제4항)
- 마. 청년인재정보 수집·관리 부서가 인재추천요청을 받았을 때 협조하도록 함.(제10조의제2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34호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 19~23년 최근 5년간 전국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의 경우, 전국 대비 서울의 비율이 50%에 육박('19년 전국 393개동 중 194개동, '23년 전국 468개동 중 228개동) 하며, 특히 초고층 건축물에 비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23년 228개동 중 207개동)
- 특히,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재난발생 요인 가운데 대규모 유동인구 및 상주인구로 인해 화재발생 시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곳으로 대형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관리 주체의 화재 및 대피 동선 등의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관한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 가. 초고층 건축물 등의 대피 및 피난 유도 시, 대피 등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35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구성 및 임무) 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을 두며, 대원은 해당 전통시장등의 규모, 점포 및 상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
2. 주변 소방통로 확보
3. 화기취급 감시
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거나 자율소방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자율소방대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소방대 운영) ① 자율소방대장은 정기적으로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율소방대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관할 소방서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및 자율소방대 그리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
2.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율소방대에 지원을 한 경우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자율소방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자율소방대의 등록
2. 자율소방대의 교육·훈련
3. 자율소방대의 지원 및 지도·감독
4. 그 밖에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0조(자율소방대 관리시스템)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및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율소방대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시장명		
소재지		
대장	성명	연락처
부대장	성명	연락처
대원수	명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율소방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첨부	자율소방대원 명단 1부	

[별지 제2호서식]

자율소방대 등록대장

순번	등록일	시장명	대장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별지 제3호서식]

자율소방대 지원 신청서

신청대상	시 장 명 (상점가명)		조직구성연도	
	소재지			
	연 락 처 (이동전화)	()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항목 (항목별 산출기준 포함)			
	활용용도			
	기대효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년 월 일

대 장 :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소방대의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상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자율소방대 등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 나. 시장에게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 함.(제3조)
- 다. 자율소방대 구성, 임무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라. 자율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마.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바.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물품 등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사. 지원을 받은 자율소방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아. 자율소방대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함.(제9조)
- 자. 자율소방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
- 차.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공이 있는 자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36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35세 이상 임신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결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본인의 결혼 준비를 위해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서울시 공공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 대상 시설과 감면의 범위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35세 이상 임신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외래 진료 및 검사를 시행한 임신부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초 저출생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3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적극적인 산전 관리를 하여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예비 신랑·신부의 결혼식 비용 경감 및 공공예식장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35세 이상 임신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근거 마련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 나. 서울시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근거 마련 (제4조의7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23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 방법에 대한 사항
3. 보조기기 수요조사에 따른 구매 계획 및 재정지원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5. 그 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4곳의 보조기기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기기센터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수요에 따른 보유 기기가 부족하고 직접 지원(교부)이 아닌 대여사업만 주로 이뤄지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
- 이에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고 사용되도록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보조기기 구매 계획 및 재정지원요구에 관한 사항,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 증진을 도모하고 센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보조기기 수요조사에 따른 구매 계획 및 재정지원요구에 관한 사항,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제8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38호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산림교육” 이란” 을 ““산림교육” 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교육” 이란” 을 “교육” 이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유아숲체험원” 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을 ““유아숲체험원” 이란 법 제12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유아동네숲터” 란” 을 ““유아동네숲터” 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체험시설” 이란” 을 “체험시설” 이란” 으로 한다.

3. “산림교육전문가” 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제3조 중 “시장” 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아숲지도사 배치, 교육 등 활용방안

제6조제2항제1호 중 “5천㎡ 이상으로 한다” 를 “5천제곱미터 이상”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천㎡미만이며” 를 “5천제곱미터 미만” 으로, “300㎡ 이상으로 한다” 를 “3백제곱미터 이상” 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활용 등) 시장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산림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산림교육전문가" 정의 규정 신설(제2조제3호)
- 나. 유아숲 운영계획에 유아숲지도사 배치, 교육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제4조제2항 제5호 신설)
- 다. 시장이 산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함.(제7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239호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전체가 동일하도록”을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오프라인 영업제한 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배송 가능)
2.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지정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대형마트는 그 동안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제고와 지역의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했으나, 영업 부진으로 폐업이 이어지면서 지역상권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2024.1.22.)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중 지정 원칙’ 철폐와 영업시간 외의 온라인 배송 허용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온라인 배송 영업을 오프라인 영업제한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친 월 2회의 의무휴업일 지정 시 서울특별시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 (제12조 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40호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치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지급
- 2.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관리인에 대한 수집보상금 지원
- 3.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②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에 대한 실적평가와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계획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실적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나.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41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6항 중 “제4호의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를 “제4호의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의 공공준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2)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연면적의 50% 이상이 기숙사인 경우에 한함)”으로 한다.

제55조제17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서울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나목1) 중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통해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유주거 수요 및 주거 유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
- 노후모텔촌 밀집지역의 노후도 개선과 관광숙박시설 및 산업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 상업지역 내 상가의 공실률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공동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비율)을 낮추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준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2)에 따른 임대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제16항)
- 나. 관광숙박 특화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3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제17항)
- 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비주거비율의 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별표 3 제1호나목1)

◆ 서울특별시조례 제9242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 예산의”를 “서울특별시 예산의”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서울시와”를 “시와”로 한다.

제4조 중 “시민참여”를 “있어서 시민참여”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시민들”을 “시민”으로 한다.

제6조 중 “시민의견”을 “있어서 시민의견”으로 한다.

제7조 중 “시의 예산 편성 등”을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 누리집”으로 한다.

제9조 중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을 “예산과정”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할”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로 한다.

제10조 중 “시의 예산 편성 등”을 “예산과정”으로, “자는”을 “시민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 누리집”으로 한다.

제12조 중 “수행하여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을 “수행하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지역회의, 민관예산협의회”를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로, “대한 최종”을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

작위 추천방식에 의해”를 “공개모집절차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촉 이후 한달 이내에 제13조제6항에 따른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의 제목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를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선출하고, 임기 동안”을 “위원회를 대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는 제18조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를 겸임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회하고”를 “개회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총회”를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로, “시민”을 “위원이 아닌 시민”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람이”를 “시민 및 전문가가”로, “경우 절차에 따라”를 “경우”로, “하며, 그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견은”을 “의견을”로 한다.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안의 최종적인 심의·조정을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총회”라 한다)를 소집한다.

제2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해당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⑦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⑧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18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중전의 제16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기능분과의 자율적 운영

제20조(중전의 제22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3호) 중 “신규”를 “신규편성”으로, “사업”을 “사업이나 행정운영경비 위주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피할”을 “회피할”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19조) 중 “규정을”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로, “홈페이지를”을 “누리집을”로 한다.

제22조(중전의 제20조)제1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4장(제23조 및 제24조)을 삭제하고,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민에게”를 “시민 또는 단체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종류·액수는”을 “포상금 등을 지급할 경우”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를 “포상금 등의 종류 및 액수를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로 한다.

- ②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 전문가 등이 위원회등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경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앞에 “제5장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를 삭제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원 등

제28조 앞에 “제6장 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25조(중전의 제29조) 중 “조례시행”을 “조례 시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시민참여예산 운영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참여예산위원 자격요건 완화(제13조)
- 나. 위촉 후 교육을 미수료한 경우의 적절한 조치 수단 마련(제14조제4호)
- 다. 시민참여예산 운영기구 개편
 - －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제17조 및 제18조)
 - － 운영실적이 저조한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지원협의회 등을 폐지
- 라.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심사기준 개정(제2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43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의4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
별표 중 청소년 및 어린이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2항제4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의4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시립과학관의 관람료를 면제하는 동시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시립과학관의 관람료를 감면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및 기후동행카드 이용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시립과학관 관람료 면제 사항을 규정함(제6조제1항제12호 신설)
- 나.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유효한 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액함(제6조제2항제4호 신설)
- 다.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경 규정 기한을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정함(부칙 제2조)
- 라. 관람료 중 청소년 및 어린이 요금을 무료로 함(별표)

◆ 서울특별시조례 제9244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을 “시행규칙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을 각각 “시행규칙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중복운행구간의 정류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일반노선버스 운행구간과 마을버스 운행구간이 중복하는 경우 중복 운행구간에서 정류소 개수를 개별노선의 특수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별 노선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복운행 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4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중복운행구간의 정류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제10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4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을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제2조제10호에도 불구하고 주택접도율의 도로 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 제4호”를 “별표 1 제5호에”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를 말한다.

제62조제3항 중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계획과 추진사항을”을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계획과 추진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86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4호”를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제1항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 따라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하여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폭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주민이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계 등을 설정하여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등이 도입됨. 이에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구청장이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을 반영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 조례는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의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시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자료에 대한 공통서식이 규정되지 않아 미해산(청산) 조합에 대한 통합 관리가 미흡함. 이에 조합의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자료 제출 시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미해산(청산) 지연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서의 주택접도율 요건 산정 시, 도로 폭은 6미터 이상을 적용토록 함(제6조제1항제2호)
- 나.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함(제6조제3항)
-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제9조의2제1항)
- 라. 구청장이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는 조합의 해산(청산) 계획과 추진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의 효율적 관리 체계 마련함(제62조제3항)
- 마.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관련 자료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도록 하여 미해산(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함(제86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46호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00명” 을 “300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1년” 을 각각 “3년” 으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 중 “300명” 을 각각 “1,000명”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노동이사는 그 임기가 종료 되는 시점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의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에 비해 운영대상, 위원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서울시 노동이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원 300명 이상을 노동이사 운영 대상 기관으로 함(제4조)
- 나. 노동이사 자격을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함(제6조)
- 다. 노동자 수 1,000명 이상인 경우 노동이사 2명으로 함(제7조)
- 라.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노동이사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함(부칙)

◆ 서울특별시조례 제9247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 을 “의 10퍼센트 이상” 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을 “최소 면적은 9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설치 의무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개소에 해당 면적 확보시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5미터 이상” 을 “9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설치 의무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대지여건 상 일부 대지 폭이 9미터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항 제4호 중 “6미터” 를 “8미터”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6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로 한정하여 산입한다.” 를 “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또는 필로티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및 실내에 조성된 공개공지 등에 대한 완화적용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변경허가 포함),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포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6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개공지와 관련하여 지역 내 쾌적한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개공지가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일원화 함(제26조제1항제2호)
- 나. 협소한 공개공지 계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공지 계획 최소면적 및 최소폭 등을 상향 조정 함(제26조제2항)
- 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규정을 정비 함(제26조제3항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248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의원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안된 연구과제 중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과제를 전문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고 그 연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 구성) ① 의원연구단체는 대표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3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등록일(제7조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심의·의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1개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는 구성할 수 없다. 다만,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존속기한) ① 의원연구단체 대표가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의원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연구단체 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임기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원연구단체 변경신청) 의원연구단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변경신청서를 즉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구성요건의 변경
2. 제4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내용의 변경

제6조(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의원연구단체 심의) ①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등 평가에 관한 사항
4. 우수 의원연구단체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구입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경비
- ② 의원연구단체 대표는 연구활동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 대표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가 필요한 때에는 연구활동별 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공문 발송
2. 현장방문 등을 위한 차량지원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제접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의장의 임기 시작 이후에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위촉 해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속한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민간전문가 약간 명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연구용역 범위)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연구용역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
2.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의원의 개인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
4. 최근 3년 유사·중복 연구수행 등으로 연구의 차별성·실효성이 낮은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

제13조(연구용역 사전검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안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전 관련 전문기관에 과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용역비)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용역의 추정가격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15조(연구용역 관리) ①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은 제14조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필요한 때에는 과제제안서를 제출하고, 연구용역 준공 시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준공확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

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⑤ 수행기관은 계약기간 내에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열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수행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연구용역 수행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6조(사유서 제출) 의원연구단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변경 운영한 경우
2. 예산이 목적 이외로 사용된 경우
3.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제17조(민간전문가의 자격) 제11조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해당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8조(정보공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합결과보고서

제19조(평가 및 시상) ① 의원연구단체의 대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에 관한 종합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해당 연도 5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이 우수한 의원연구단체에게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활동비 등 예산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본문의 연구활동비 등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신규, 연장)

2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 1. 단 체 명 :
- 2. 설립목적 :
- 3. 구성의원(※ 신규 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소 속 상 임 위 원 회	서 명	비 고

신청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연구 활동 계획 서(신규, 연장)

20 . . .

본 연구단체의 20 년도 연구활동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제출자		대표자 의원 (인)	
연구내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연구 활동비	총 액		
	산출내역		
기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경신청서

20 .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본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내용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연구단체명		
제출자	대표자	의원 (인)
구성의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등록내용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변경일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준 공 확 인 서

1. 의원연구단체 :
2. 과 제 명 :
3. 참 여 의 원 :
4. 연 구 기 간 :
5. 소 요 예 산 :
6. 수 행 업 체 :
7. 준 공 일 :

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가 준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준 공 확 인		
연구단체 대표의원	성 명 :	(서명)
연구용역 제안의원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의원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규정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의원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 나.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존속기한, 변경신청, 등록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라.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의회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함(제7조)
- 마.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 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사. 연구용역의 범위 및 사전검토에 관하여 규정함(제12조 및 제13조)
- 아. 민간전문가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함(제17조)
- 자. 최종보고서 및 종합결과보고서에 관한 공개 근거를 규정함(제18조)
- 차. 평가 및 시상에 관하여 규정함(제1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49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2년 12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 폐지되었으나 현행 조례에는 아직 마을공동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마을공동체 관련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마을공동체의 정의를 삭제함(제2조제1항제9호 삭제)
- 나.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이미 폐지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와 관련된 시설들을 삭제함(제44조제6호 삭제)
- 다.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 라. 마을공동체의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함(제48조 삭제)

◆ 서울특별시조례 제9250호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등에 대한 폭언·폭행 예방을 위한”을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2.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3. 민원인의 폭언·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원 수위가 높은 경우 공무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음.
-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보완하여 시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10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51호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한다.”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소식지와 대시민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의 임기는 2년임.
- 반면, 조례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임. 이에 타 위원회와 동일한 임기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 임기를 1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연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6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52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지원사업”을 “지원사업. 이 경우 「한의학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4646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지원사업”을 “지원사업. 이 경우 「한의학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난임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다수의 환자가 의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한방 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8년부터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는바,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한의학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253호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2022년부터 이사가 잦은 청년 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음.
-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주거사업 범위에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을 추가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54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그간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통제기능이 필요하여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행 위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위탁기간 조정이 필요하게 됨
-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조정하여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 가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제21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55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사업 계획서 및 사업 정산서”를 “사업 계획서, 사업 결과 및 정산서”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을 “서울특별시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성과 기반의 사무국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이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예정 또는 지원한 경우, 이에 대한 ‘사업 계획서와 사업 결과 및 사업 정산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에 ‘사업 결과’를 추가하고, ‘사업 계획서와 사업 결과 및 사업 정산서’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의무를 신설함(제17조제5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56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계정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도시재생일반계정
2. 남산생태여가계정

제6조의 제목 “(기금의 용도)” 를 “(도시재생일반계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8호 중 “도시재생기금” 을 “도시재생일반계정”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 을 “도시재생일반계정” 으로 한다.

① 도시재생일반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2.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차입금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 (단체)의 기부금품
6. 도시재생일반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남산생태여가계정)

①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남산공원기본조례”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곤돌라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2.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남산생태여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남산공원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생태환경 보전 사업의 시행
2. 「남산공원 기본조례」 제9조에 따른 여가공간 조성 사업의 시행
3. 남산공원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4.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제8조(중전의 제7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균형발전정책과”를 “각 계정별”로 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가. 도시재생일반계정 - 균형발전정책과장

나. 남산생태여가계정 - 도시정비과장

제9조(중전의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11명”을 “2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규정된 도시재생기금 남산생태여가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기금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재생기금 내 남산 곤돌라 운영 수익 관리를 위한 남산생태여가계정 신설 (제5조)
- 나.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재원 조성 및 용도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
- 다. 남산생태여가계정의 분임기금운용관을 도시정비과장으로 함 (제8조제1항)
- 라.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 필요시 분과위원회 설치 (제9조제3항)
- 마.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20명 이내로 확대 (제10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57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① 시장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하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인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소방·피난 규정이 도입되기 전 지어진 노후 아파트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바,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경우 피난유도를 통한 예방이 중요함
-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피난유도선 등의 설치가 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설치 및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있어 피난안내선 등 옥상피난설비의 보급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의 자율적 설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의 3)

◆ 서울특별시조례 제9258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의견청취 전에” 를 “위해” 로, “수렴해야” 를 “수렴하고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의 의견을 들어야” 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대중교통요금 조정을 위한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는바, 대중교통요금 조정 시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여 시민의견 수렴을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중교통요금 조정을 위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청취안을 작성하여 서울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제10조)
나. 조문 체계와 형식을 고려하여 조문을 수정함 (제1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59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도로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안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시정명령)” 을 “(시장의 조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 중 “시정명령” 을 “명령” 으로, “「도로법」 제117조제2항” 을 “제9조의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도로법」 제117조제2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천재지변, 재해, 재난,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작성 및 자문회의 상정 예외 조항 부재
- 도로공사장에 대해 자문회의 결과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정명령 후 시정조치 미시행시에만 과태료 등 행정 조치 가능
- 일부 공사장에서 공사편의를 위해 교통소통대책 미이행후 시정명령 후에만 보완하는 사례 발생
-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교통소통대책 미시행 경우는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즉각적인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공사시행자에 대한 소통개선대책 준수책임 강화

2. 주요내용

- 가.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함. 이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안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제4조제5항)
- 나. 시장은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10조제1항)
- 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의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60호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남산공원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산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식생을 개선하여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남산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공익에 적합하고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④ 남산공원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산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남산 근린공원을 말한다.
2. "보전"이란 남산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유지 관리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책을 말한다.
3. "여가공간"이란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의 의무) ①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원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남산공원 여가공간 및 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되며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남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남산공원의 생태환경 보전 및 여가공간 조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남산공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남산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남산공원의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산공원의 생태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남산공원의 여가공간 조성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생태환경 보전 및 여가공간 조성 사업 관련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산공원 생태환경과 여가공간의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아닌 생태환경의 회복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마련하여야 하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8조(생태환경 보전 사업) 시장은 남산공원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종합관리 사업
2.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사업
3. 인공구조물의 자연성 복원 관련 사업
4. 식생훼손 방지 및 무분별한 이용 관리를 위한 사업
5. 친환경 방제 등 식생 및 생물서식처 치유를 위한 사업
6. 남산의 보전·이용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적 목적의 활동 지원
7. 그 밖에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여가공간 조성 사업) ① 시장은 남산공원 내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공간의 신규 조성 및 정비
2. 여가공간의 유지관리
3. 여가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4. 그 밖에 여가공간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한다.

제10조(남산공원 추진사항 공표) ① 시장은 남산공원 생태환경 보전 및 여가공간 조성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5년마다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산공원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현황, 시사점
2. 남산 생태환경 현황 및 시민이용 현황
3. 그 밖에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생태여가 공공재원 마련

- 제11조(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및 공공재원 마련을 위해 남산공원 내에 곤돌라(「케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동수단을 말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곤돌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투자·출연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곤돌라의 운영을 위탁 또는 대행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곤돌라의 이용료) ① 시장은 곤돌라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곤돌라 수입금의 사용) 곤돌라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
1. 제11조 제3항에 따른 곤돌라 운영관리에 관한 비용 보전
 2. 도시재생기금 남산생태여가계정 재원의 조성

- 제14조(도시재생기금 남산생태여가계정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제13조 제2호의 재원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도시재생기금 조례"라 한다)」에 따른 도시재생기금 내에 남산생태여가계정을 둔다.
- ② 남산생태여가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절차 등은 도시재생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남산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15조(남산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남산공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남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산공원 비전, 전략 및 장단기과제 설정에 대한 사항
 2. 남산공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남산공원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사항
 4. 남산공원 여가공간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남산 및 남산 주변부의 보전과 관리, 시민참여 등 필요한 사항

-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과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시 공무원 5명 내외
2. 위촉위원 : 환경·생태·자연성 회복·도시·경관 등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등

제20조(금지행위 및 출입제한) ① 누구든지 남산공원 내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안내표지 설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남산의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함
- 또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남산공원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제6조)
- 나. 남산공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7조)
- 다. 생태환경 보전 사업 및 여가공간 조성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8조~제9조)
- 라. 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 수입금의 사용, 도시재생기금 남산생태여가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1조~제14조)
- 마. 남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5조~1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61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를 “설치하여”로, “운용하여야 한다”를 “운용 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중 전의 제7호)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 운용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의 구성·운영 변경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제고하고 기금운용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기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 운용 시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함(제7조)
- 나. 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10조제2항제7호 신설)
- 다.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운용부서가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관리하도록 함(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262호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 2년 마다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하며, 해당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의 경우, 교육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실태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는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반면, 서울시는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추진해, 조사 기간의 차이 및 정확한 수요 파악의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중앙정부의 실태조사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해, 타 유관기관 등에 보다 최신식의 실태조사 결과치를 제공하고, 타 기관에서 보다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의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 주요사항을 명시해, 실태조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목 신설

2. 주요내용

- 가. 실태조사 기간을 조정하고, 실태조사 사항 등에 대해 신설함 (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63호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를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뜻하며,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2차 흡연과 흡연자의 옷, 벽, 가구 등에 흡착된 유해 물질이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쳐 비흡연자에게 보다 장기간 피해를 미칠 수 있는 3차 흡연을 모두 포함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로, “버스정류소”를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흡연과 간접흡연의 정의를 확대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제2조제1호)
- 나.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뜻하며,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2차 흡연과 흡연자의 옷, 벽, 가구 등에 흡착된 유해 물질이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쳐 비흡연자에게 보다 장기간 피해를 미칠 수 있는 3차 흡연을 모두 포함(제2조제2호)
-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로 확대(제5조제1항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264호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뿌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뿌리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뿌리산업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뿌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뿌리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과의 연계
4. 뿌리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뿌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5조의 종합계획과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 육성 및 뿌리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뿌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뿌리산업 관련 실·본부·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뿌리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서기관이 되고 서기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표창) 시장은 뿌리기업의 육성이나 진흥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뿌리기업 및 종사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정부는 2012년부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높지만 낮은 생산성과 저임금 구조, 생산인력의 고령화와 생산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반 공정산업”과 “소재다원화 공정산업”, “지능화 공정산업”을 뿌리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관련 정보 지원, 인력유입 활성화,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전국에 분포한 6만 1천여개의 뿌리기업 중 4천 5백여개 기업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해 있음에도 별도의 조례가 없이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뿌리산업 중 일부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뿌리산업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뿌리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제5조)
- 나. 뿌리산업의 육성 및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제6조·제7조)
- 다. 뿌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함(제8조·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65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화문광장은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자, 국민 소통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광화문광장 내 국기 게양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광화문광장 내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3조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266호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에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의 항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해당 구역 교통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지정·해제 및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함(제5조제1항)
- 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5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67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며, 필요시 구청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의 항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해당 구역 교통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체계적인 지정·해제 및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며, 필요시 구청장에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함(제5조제1항)
- 나. 시장은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함(제5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68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국가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문화유산기본계획과 자연유산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가유산 보호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시장은 국가유산의 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3장 국가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제4조(국가유산 기초조사) ① 시장은 국가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국가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국가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지정유산이 아닌 국가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유산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국가유산 정보화의 촉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국가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이 국가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운영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시장은 시지정유산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별 특성에 따른 화재 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 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국가유산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시지정유산의 화재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는 시지정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지정유산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

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지정유산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시지정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
4. 시기념물 및 시자연유산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⑦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설치

제4장 국가유산의 지정

제7조(시지정유산) 시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지정자연유산(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을 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지정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1. 유형문화유산 :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기념물 :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민속문화유산 :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4. 자연유산 : 「자연유산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

제8조(문화유산자료)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을 할 때 국가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법」 제27조 및 「자연유산법」 제41조에 따라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의 사항은 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이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지정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1조(지정서의 교부)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지정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국가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줄 수 있다.

제12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국가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해서는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지정 해제)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이 시지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국가유산이 「문화유산법」 제23조, 제25조, 제26조 또는 「자연유산법」 제11조, 제12조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면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날부터 시지정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지정유산의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국가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에 관하여서는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시지정유산의 소유자가 제3항과 제10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지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이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시지정유산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국가유산(이하 “임시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하되,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15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의 지정)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제5장 국가유산의 관리와 보호

제16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 시지정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국가유산을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지정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국가유산을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시장은 시지정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자치구나 그 국가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시지정유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유에 속하는 시지정유산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가유산의 관리단체는 자치구가 된다. 다만, 국가유산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 그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지정하려는 관리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시보에 고시하고,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 등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리단체가 시지정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

리단체가 부담하되,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 능력이 없으면 시 또는 자치구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8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문화유산법」 제13조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유산은 해당 국가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2. 시지정유산은 해당 국가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시지정유산 중 시장이 지정한 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 일반묘역, 일반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 지정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지정유산은 제외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시지정유산(이하 “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문화유산법」 제13조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별표 2의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국가유산과 조화되는지 여부
3. 국가유산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4.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수, 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6.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
7. 고도경관 또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 저해 여부
8. 매장유산의 유존 여부
9. 그 밖에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④ 행정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정유산은 국가유산청장과, 시지정유산은 시장과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 결과가 국가유산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국가유산(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경계에 직접 접해 있는 필지로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다만, 하나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지역 범위 내외를

걸쳐 있는 경우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허가사항) 시지정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념물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시지정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시지정유산(보호물, 보호구역과 자연유산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동물·식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 제20조(허가기준)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국가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보호계획과 제2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 제21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②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자연유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는 자연유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 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 또는 「자연유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시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보호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구청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교부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 ⑤ 시장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연유산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자연유산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자연유산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자연유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사항) 시지정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經緯)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규(新舊) 소유자가 각각 연서(連署)로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시지정유산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시지정유산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地番), 지목(地目), 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시지정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19조제1호에 따라 허가된 국가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제19조제3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국가유산을 현상변경(現象變更)하거나 그 밖의 행위에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9. 시지정유산을 시 관할 행정구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시 반입한 경우

제24조(행정명령 및 조치) ① 시장은 시지정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지정유산의 관리 상황이 그 국가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19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지정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5. 제19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조치

② 시장은 시지정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시장과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시지정유산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지정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시지정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정기조사) ① 시장은 시지정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 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더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지정유산을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할 때는 미리 그 국가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리단체에 대하여 시지정유산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시지정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지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시지정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지정유산의 수리 및 복구
4. 시지정유산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5. 그 밖에 시지정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⑧ 시는 제4항에 따른 조사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7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시지정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 보전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 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 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8조(보조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시지정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시지정유산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25조에 따른 기록의 작성·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시지정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제29조(경비 부담)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유산으로서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가유산에 대한 관리, 보호 또는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임시지정유산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2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한다.

제6장 국가유산의 공개 및 관람료

제31조(시지정유산의 공개 등) ① 시지정유산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지정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국가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지정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국가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보에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보에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관람료의 징수) ①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국가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제7장 시 소유 국가유산의 운영

제33조(시 소유 국가유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시 소유 국가유산을 단순 관람 목적이 아닌 촬영 및 장소 사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왜곡하는 내용이 아닐 것

2. 살인·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닐 것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 사용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거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유산과 관련이 있는 행사

2. 글짓기·그림 그리기·서예대회 및 이와 유사한 비영리 교육 또는 문화 행사

3. 정부,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회의, 전시 등

의 행사

4. 그 밖에 공익목적의 행사

④ 제1항에 따라 촬영 및 장소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촬영 및 장소 사용 허가에 필요한 사항 및 사용료의 액수는 시설 사용의 유형 및 사용 시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시 소유 국가유산의 관람자나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배상 또는 보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액은 시장가격에 따른 실제 비용으로 한다.

제35조(시 소유 국가유산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시 소유 국가유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 소유 국가유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보전,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2. 시 소유 국가유산을 관광 자원화하거나 명소(名所)화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② 시 소유 국가유산 운영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장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

제3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시지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시지정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시지정유산의 중요한 수리나 복구의 명령

4. 시지정유산의 현상변경 또는 시외 반출의 허가

5. 시지정유산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 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또는 이전 등의 명령

6. 시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자문

7. 시지정유산의 보존, 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시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 대한 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9. 표석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유산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주요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국가유산 관련 부서 4급 이상 공무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38조(해촉·해임)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수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문화유산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매매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매장유산을 발굴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4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 및 연구와 계획을 입안하며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전문위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42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매장유산의 보호) ① 시장, 구청장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43조(매장유산 지표조사) ① 「매장유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매장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의 건설공사라 함은 별지 제5호서식이 정하는 한양도성(내부 구역 및 사적 비지정 구간 포함)과 한양도성의 보호구역 외곽 100m 이내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44조(지표조사에 따른 보존조치의 명령) ① 시장은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매장유산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매장유산법」 제10조를 준수하여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건설공사의 인가·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는 「매장유산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매장유산의 기록·작성 등) 시장은 확인된 매장유산의 기록을 작성·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6조(매장유산의 공고) 시장은 「매장유산법」 제22조에 따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로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장 국가유산수리 등

제47조(국가유산수리 등의 기본원칙) 국가유산수리, 실측 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 등”이라 한다)는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 등으로 인하여 시지정유산과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국가유산수리 등의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국가유산수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3월 31일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구청장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등록) 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관할 내에 두고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이 규정한 기술 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폐업 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변경 신고, 폐업 신고를 받으면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 ⑦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및 변경 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의 발급·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국가유산수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50조(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신고가 있을 때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있을 때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수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등록 요건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1조(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①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국가유산수리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② 제1항의 상속인은 국가유산수리업을 상속받으면 「국가유산수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속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2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국가유산수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 실측 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3조(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완료하면 60일 이내에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지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시장은 국가유산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국가유산수리 등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이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고증, 양식,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국가유산수리 현황의 검사 등) ① 시장은 등록 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에게 그 업무 및 국가유산수리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경영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의 발주자·국가유산감리원 등 국가유산수리 등과 관련된 자에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6조(시정명령 등) 시장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이 「국가유산수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법」 제51조에 따라 수수료료를 내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국가유산수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58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기술 수준 및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 설계를 발주한 시장은 그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 설계 중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국가유산수리법」 제29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발주자
2.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3. 지정일 및 유효기간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가 지정기간 동안 「국가유산수리법」 제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때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유산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장 시등록문화유산

제59조(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60조(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 ①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시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시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국가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시등록문화유산의 신고 사항)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63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국가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문화유산법」 제7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문화유산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국가유산을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 제62조(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① 시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유산(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시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 가. 해당 국가유산이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나. 해당 국가유산이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1)에서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 1) 교량·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 2) 터널·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 3) 그 밖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2. 해당 국가유산(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 처리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포함된 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나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문화유산법」 제7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문화유산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받은 시등록문화유산
 2. 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등록문화유산
 3.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등록문화유산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 제63조(등록의 말소) ①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② 시등록문화유산이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③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등록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64조(준용 규정) ①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지정유산, 문화유산자료”는 “시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국가유산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 ②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의 원칙,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허가 사항의 취

소,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권에 따른 조사, 보조금, 경비 부담, 관람료의 징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지정유산”은 “시등록문화유산”으로, “관리단체”는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본다.

제12장 보칙

제6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시지정유산(보호물, 보호구역과 임시시지정유산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하는 명령·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前所有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19조제1호에 따른 허가 사항
2. 제19조제2호에 따른 시지정유산의 탁본·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
3. 제23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제24조에 따른 시지정유산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7조(국가유산 방재의 날) ① 시장은 국가유산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국가유산에 대한 안전 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시행한다.

② 국가유산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표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지정 또는 임시지정유산의 멸실, 유실, 도난, 훼손을 방지 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지정 또는 임시지정유산을 관리, 보호 또는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 또는 공개로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
3.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4. 국가유산 보존 관련 전람회와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제13장 벌칙

제69조(과태료) ① 시장이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법」 제103조 및 영 제4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내야 할 사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시장은 「국가유산수리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부과 기준에 따라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7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이 제7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시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영 제48조제2항과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7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는 이 조례 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별표 1]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제6조제6항 관련)

1.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

가.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 1)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 또는 지역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세부 규격 등은 ‘서울시 국가유산 금연구역표지판 표준형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설치 및 부착하여야 한다.

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

1) 금연구역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같다.

2) 흡연구역

흡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 및 설치방법

가.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제18조 관련)

적용범위 및 대상국가유산		높이 기준	비 고 (국가유산 높이)
4대문 안의 국가지정유산	송례문, 흥인지문, 우정총국,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 수궁, 종묘, 경희궁, 운현궁, 종묘, 서울 문묘, 탑골공원, 서 울사직단, 서울사직 단정문, 정동교회	국가유산보호구역 경계지표면에서 국가 유산높이 기준하여 양각 27° 선 이내	• 송례문 : 19m • 흥인지문 : 20m • 우정총국 : 6.5m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 3.2m • 경희궁 : 12m • 운현궁 : 7m • 서울문묘 : 7m • 탑골공원 : 12m • 서울사직단 및 서울사직단 정문 : 6m • 정동교회 : 2m(답장기준)
	기타국가유산	보호구역 경계지표(보호구역이 지정되 지 않은 국가유산은 외곽 경계)에서 높이 3.6m를 기준 하여 양각 27° 선 이내	• 서울성곽은 4대문 내·외 구분없이 적용
4대문 밖의 국가지정유산 및 서울시지정유산		보호구역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 은 국가유산은 외곽경계)지표에서 7.5m높이를 기준하여 양각 27° 선 이 내	

※ 양각 27° 선이란 보호구역 경계지점에서 건축행위를 할 예정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건축물 높이가 2:1에 해당하는 선을 말
한다.

※ 건축물의 일부가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의 적용대상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전체에 대하여 높이 기준을 적용한
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				처리기간	
				30일	
추천인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전자메일		
동물치료소 추천대상	⑥기관명		⑦주소		
	⑧대표자		⑨생년월일		
	⑩전화번호		⑪전자메일		
	⑫수의사 면허번호		⑬수의사 면허일자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 추천인 국가지정유산관리단체의 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

①교부 번호	②교부 일자	③기관명	④지정일	대 표 자			
				⑤성 명	⑥생년월일	⑦수 의 사 면허번호	⑧면허일자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4호서식]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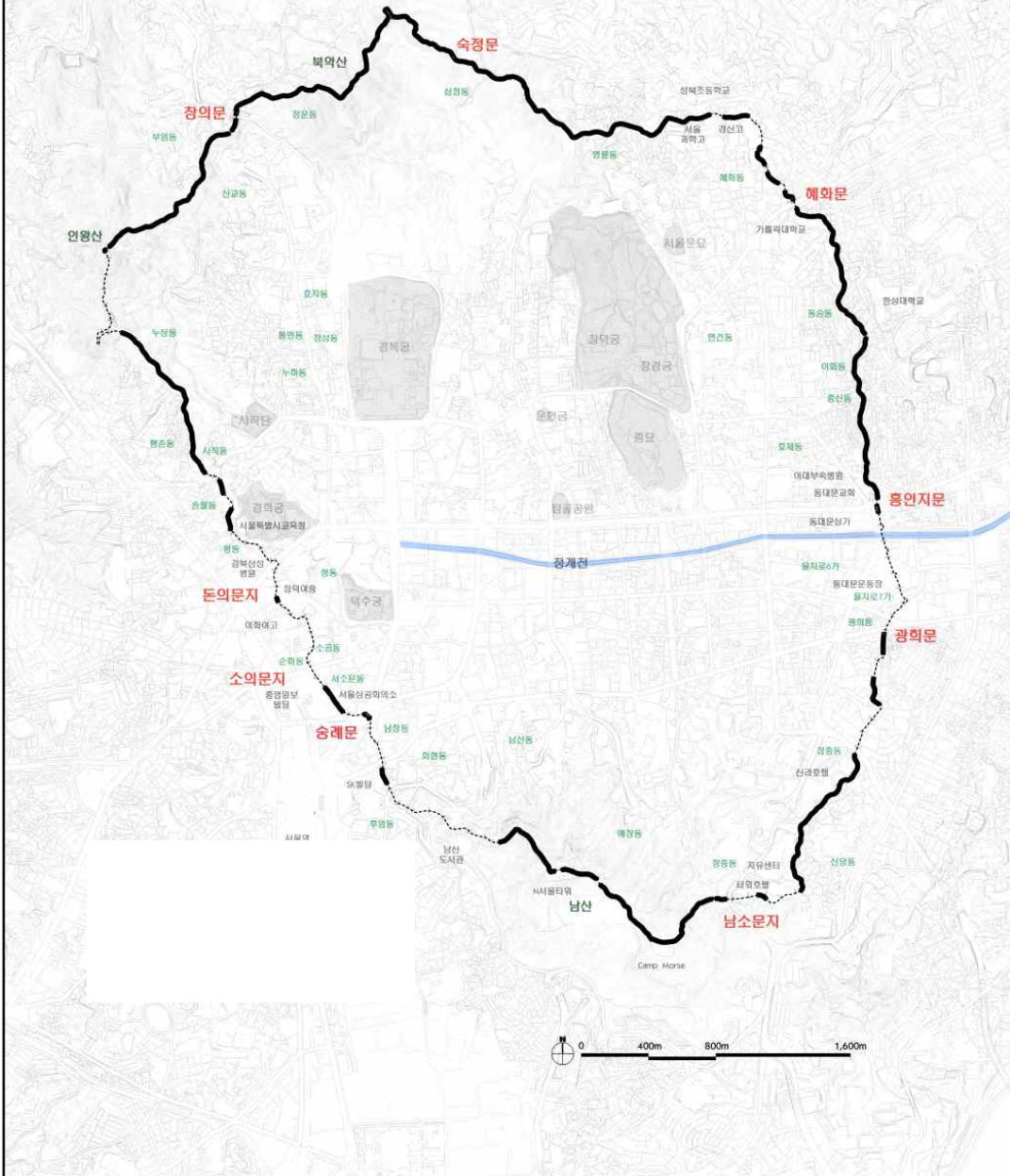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지정번호			②지정일자	
신청기관	③기관명		④주 소	
	⑤대표자		⑥생년월일	
	⑦수의사 면허번호		⑧수 의 사 면허일자	
재교부사유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신청 하오니 재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별지 도면]

한양도성[내부 구역 및 사적 비지정 구간(점선)포함]과 한양도성의 보호구역 외곽 100m 이내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는 「매장유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에 의거 지표조사 대상임.(제44조제2항 관련)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는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왔고, 일체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한계가 있어,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 예정임
- 따라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함(제1조)
- 나. 국가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사항을 규정함(제2조)
- 다. 국가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와 보호사항을 규정함(제18조)
- 라. 국가유산 관리와 보호 등에 대한 경비 보조사항을 규정함(제28조)
- 마. 국가유산위원회 설치·구성·해촉, 위원의 연임 제한 등을 규정함(제36조~안 제42조)
- 바. 매장유산의 보호·지표조사·기록·작성 등을 규정함(제43조~제47조)
- 사. 국가유산수리 등의 기본원칙, 시행계획, 현장 점검 등을 규정함(제48조~제59조)
- 아.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관리, 현상변경 등을 규정함(제60조~제65조)
- 자. 국가유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70조~제71조)
- 차. 폐지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와 연계성을 위해 경과조치를 신설함(부칙 제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69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및 부서 등과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매년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해, 전년도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 교통 사고 현황 및 분석 등 자료의 경우, 다양한 유관기관, 기타 교통안전 담당부서 등의 방대한 자료 등으로 실적자료 취합 및 활용 시의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보다 용이한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부서 등과의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을 통해, 실무자 등의 업무 추진 시 자료 수집 및 시간 단축, 기타 명확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제9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70호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체제 전환으로 문화재 등의 용어가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 중 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2호가목 중 “유형 문화재관련”을 “유형문화유산 관련”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결선택건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결선택건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외소재 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과 제2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지정 문화재로”를 “지정문화유산으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8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 보호구역”을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다목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2의 제2호가목2)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별표 2의 제3호가목2)와 5)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4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정자연유산

별표 4의 제4호러목 중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 “관” 을 “ “무형유산” 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무형문화재” 를 각각 “무형유산”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을 “무형유산을 지역적” 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향유함” 을 “무형유산을 실현·향유함” 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무형문화재” 를 각각 “무형유산”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무형문화재” 를 각각 “무형유산” 으로 한다.

제5조 중 “무형문화재” 를 “무형유산” 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을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재 청장” 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 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무형문화재” 를 각각 “무형유산” 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의” 를 “무형유산의” 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재” 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 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긴급보호무형유산” 이라 한다)”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무형문화재” 를 “무형유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따른” 을 “「고등교육법」 에 따른” 으로, “무형문화재와” 를 “무형유산과”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무형문화재” 를 “무형유산”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무형문화재 관련” 을 “무형유산 관련” 으로, “무형문화재에” 를 “무형유산에” 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무형문화재” 를 각각 “무형유산” 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 를 “「고등교육법」 제2조” 로 하고, 같은 호 및 제2호 중 “무형문화재와” 를 각각 “무형유산과” 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의 인정 등” 을 “시무형유산의 지정 및 보유자의 인정 등” 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을 “(시무형유산의 지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 를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 로, “무형문화재 중” 을 “무형유산 중” 으로, “시무형문화재” 를 “시무형유산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을 “시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으로, “시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을 “시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을 “시무형유산을” 로, “무형문화재에” 를 “무형유산에”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무형문화재가 시무형문화재” 를 “무형유산이 시무형유산으” 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을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 를 “시무형유산을 시긴급보호무형유산으”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무형문화재가” 를 “시무형유산

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무형문화재로서의”를 “시무형유산으로서의”로, “어려워진 시무형문화재”를 “어려워진 시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진급보호무형문화재”를 “시진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무형유산의 보전”으로,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진급보호무형문화재”를 각각 “시진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시무형문화재를”을 “시무형유산을”로, “시무형문화재의”를 “시무형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무형문화재가”를 “무형유산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각각 “시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를 “(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 또는 시진급보호무형문화재를”을 “시무형유산 또는 시진급보호무형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무형문화재 또는 시진급보호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 또는 시진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를 “(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무형문화재 또는 시진급보호무형문화재가”를 “시무형유산 또는 시진급보호무형유산이”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시무형문화재”를 각각 “시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시무형문화재를”을 “시무형유산을”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를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무형문화재 대장)”을 “(무형유산 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시진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이하 “무형문화재대장”)”을 “시진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무형유산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무형문화재 및 시진급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 및 시진급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형문화재대장”을 “무형유산대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시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시무형유산의 보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시무형유산의 보전”으로, “시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3호 중 “시무형문화재 및 시진급보호무형문화재”를 각각 “시무형유산 및 시진급보호무형유산”으

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각각 “시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무형문화재의 조사”를 “무형유산의 조사”로 한다.

제30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 보존”을 “무형유산 보존”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시무형유산의 보호·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를”를 “시무형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무형문화재의 보존”을 “시무형유산의 보존”으로,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으로, “시무형문화재의 분야별”을 “시무형유산의 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시무형문화재”를 각각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을 “(시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무형문화재를”를 각각 “시무형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무형문화재의 진흥”을 “무형유산의 진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무형문화재의 교육지원 등)”을 “(무형유산의 교육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시무형문화재가”를 “시무형유산이”로 한다.

제42조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시무형문화재 지정 대상 및 기준(제17조제2항 관련)”을 “시무형유산 지정 대상 및 기준(제17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시무형문화재는”을 “시무형유산은”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시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은 무형유산”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시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연령(제36조 관련)”을 “시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연령(제36조 관련)”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각각 “국가유산지킴이”로,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문화재를”를 각각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

제4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

제5조제1항과 제2항 중 “문화재지킴이”를 각각 “국가유산지킴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

제8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

제9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는”을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유산”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호 중 “문화재 또는 문화재적”을 “국가유산 또는 국가유산적”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재분야”를 “국가유산분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서울시문화재위원 및 문화재분야”를 “서울시국가유산위원 및 국가유산분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문화재”를 “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로,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를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이”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를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국가유산”으로, “불교문화재”를 “불교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서울특별시교육청·수도방위사령부”를 “국가유산청·서울특별시교육청·수도방위사령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유산구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③ 완충구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향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향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문화재위원”을 “국가유산위원”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는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왔고,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한계가 있어,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어 24년 5월 17일 시행 예정임.
- 이에 서울특별시 조례 중 ‘문화재’ 등의 용어를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조례 중 ‘문화재’ 등의 용어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271 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시장은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병역명문가증 등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체육시설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내용을 별표를 통해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15조의3제1항신설)
- 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정함(제15조의3제2항 및 별표 7 신설)
- 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함(제15조의3제3항)

[별표 7]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제15조의3제2항 관련)

감면 대상	감면율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분의 100
2.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수행 관용차량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 차량	
3.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	
4.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관련 차량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5. 국제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또는 서울특별시 유공납세자 주차요금 면제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다만, 유효기간 내에만 면제)	
6.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100분의 80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자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1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다만, 전기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	
1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다만,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15. 서울특별시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100분의 20
18.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9.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20. 그 밖에 체육시설 입주업체 종사자 차량 등 시장이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서울특별시조례 제9272호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 소속 소방청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관·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 라고 한다)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시 자치구 소속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6. 자치구의회 소속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자치구의회 의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

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4명의 위원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인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명과 시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감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 ③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의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명단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직자윤리제도 관련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전체 위원회 회의 전에 개최하여 위원 간 안건의 사전 검토 등으로 전체 위원회 업무의 효율을 도모한다.
-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시 공직윤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그 결과 처리 등을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먼저 규정해야 함에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먼저 규정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함.
-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윤리위원들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수임기관 규정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기능을 먼저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 준수(제2조)
- 나. 위원의 윤리문제 발생 시 해임·해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5조)
- 다. 현실과 맞지 않는 수임기관 규정 및 「공직윤리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의 조문을 삭제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273호

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민간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 임대시장의 안정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전한 민간임대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사업”이란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이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 및 제2조제7호에 따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임대인”이란 제3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5. “서울안심임대인”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임대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 및 본인의 금융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공개하기로 한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6. “서울안심주택”이란 제11조에 따라 서울안심임대인이 등록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소재 주택을 말한다.
7.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나.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이하 “주택임대관리업”) 중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주택
8.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란 제7호에 따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민간임대사업 및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기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건전한 민간임대사업의 육성과 민간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절 서울특별시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체계의 구축

제6조(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사무) 시장은 서울시 소재의 민간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
2.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 민간임대사업자 등록현황 실태조사 등 자료 관리
3. 민간임대주택의 성능 및 품질 등의 기준 마련
4. 민간임대주택의 시장분석 및 법령·제도개선 연구
5. 전세가율, 전월세전환율 등 주택임대차 시장정보 제공
6. 서울시 민간임대제도 업무편람 제작 및 보급
7.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민간임대주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제1호에 따라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2.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제고
 3.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 및 지원
 4. 공유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 ② 기본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10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시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수립·변경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60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라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관리하거나 자료를 등록·보관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열람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대학,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자문)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문가 또는 유관 기관·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건전한 민간임대를 위한 시민아카데미 교육 및 홍보
2.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3. 공동캠페인과 학술세미나 개최
4. 민간임대주택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자문

5. 민간임대주택 관련 분쟁조정 자문
6. 그 밖에 건전한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권익 보호

제10조(공정한 임대차 거래문화 정착지원) 시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한 임대차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주택정책 마련 및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울안심임대인으로 등록하고 서울안심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및 주택임대차 시장정보 제공
3. 그 밖에 공정한 임대차 거래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서울안심임대인 등록 및 서울안심주택 인증) ① 시장은 임대차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안심임대인 및 서울안심주택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권리관계와 본인의 금융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공개하기로 서약함으로써 서울안심임대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서울안심임대인이 등록한 주택에 대하여 인증번호를 발급하고 서울안심주택으로 등록한 후 관리한다.
- ④ 서울안심임대인 및 서울안심주택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서울안심임대인의 정보공개 의무) ① 서울안심임대인은 건전한 임대차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시 제출하고, 임대차계약 전 매물 확인 시 및 임대차계약 시를 포함하여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1. 임대인의 금융 신용정보로서 제5조의 기준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점 또는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2. 임대인의 체납, 보증 관련정보로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보증사고 이력서, 보증보험 가입확인서
3. 주택의 권리관계 관련정보로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동거인 포함),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현황, 건축물대장)

② 서울안심임대인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즉각 고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서울안심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 ① 서울안심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가입 시 서울안심임대인 등록 후 서울안심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에 보증에 가입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 또는 담보권 설정 금액

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때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서울안심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한 경우

제14조(서울안심임대인 등록의 말소 등) 시장은 서울안심임대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안심임대인 등록의 말소 및 서울안심주택의 인증을 취소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서울안심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허위 제공 또는 미제공
2. 보증 미가입

제4절 건전한 민간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제15조(건전한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시장은 건전한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정적인 거주기간과 임대료를 보장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주택공급을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2.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및 연도별 임대료 상승 기준 마련
3. 그 밖에 건전한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보증의 갱신 주기 및 가입금액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고 보증 가입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보증이 갱신될 때마다 갱신된 보증 가입서류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호의 사항 및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일괄 교부하여야 한다.
3.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신탁재산(임대료, 관리비, 하자보수금 등)과 고유재산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매월 관리비 부과 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주택관리에 대한 내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가. 임대료 수납현황

나. 관리비 사용처

다. 건물 하자 보수사항

라. 기타 특이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현재 서울시 내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광역시도의 체계적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며,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재량적으로 판단토록 하고 있어, 서울시 내 자치구마다 각기 다른 행정처분으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임.
-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민간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체계의 구축(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나.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권익 보호(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다. 건전한 민간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제15조, 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74호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 우려자”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 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 다.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안심물품”이란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심물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전략 및 목표, 추진 방향
2.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3.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심물품 지원사업 대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범죄피해자
2. 범죄피해 우려자
3. 사회안전약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협력관계 구축) ① 시장은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물품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안전약자”, “안심물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 다. 안심물품 지원사업 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함(제5조)
- 라. 안심물품 지원 대상 및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6조)
- 마.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안심물품도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75호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개도국”을 “개발도상국”으로 하고, “지원”을 “지원(장학금 지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등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서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되고 있음.
- 우리보다 앞서 인구감소에 직면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자 장학금 등의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산업전반의 쇠퇴를 방지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와 인식을 확산해 왔음.
- 이에 서울시가 실시하는 공적개발원조의 활용을 위한 사업에 개발도상국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추가하여 미래의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고, 서울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공적개발원조의 활용을 위한 사업 중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에 ‘장학금 지원’을 추가(제2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76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유효한 「다둥이 행복카드」 등 그 자격이 확인된 차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반영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감면 대상에 있어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던 만큼 향후 통행료 지원대상에 관련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규정함.(제6조제11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277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 중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을 “주차시간측정계기 또는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각 호의 자격이 확인이 되는”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정산과정이 번거롭고,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다자녀 가족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발생해 왔음.
- 이에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에 바로녹색결제시스템 각 호의 자격이 확인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으로써 실물 카드 미소지로 인해 주차요금을 감면받지 못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주차요금 감면 가능한 경우에 바로녹색결제시스템 각 호의 자격이 확인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제7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78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업무혁신 사례 발굴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행정”이란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 내부 업무혁신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의 소속 공무원,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을 말한다.
3. “제안”이란 공무원 등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마.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바.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4.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실행하기로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학습활동”이란 공무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나 문제에 대한 지식을 창출·공유하고 직무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과 접수) ① 공무원 등은 제안을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등은 제안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표시하되,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 1명을 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5조(창의행정상 선정) ① 시장은 창의적인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출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창의행정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창의행정상의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창의성
2. 실현가능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창의행정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제안부문: 창의적인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
2. 창의실행부문: 제출한 제안의 적극적 실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
- ③ 시장은 공정한 창의행정상 선정을 위해 시민(관련 전문가 포함), 시 소속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단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민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④ 평가단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
- ⑤ 시장은 창의행정상 선정 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평가단 운영, 세부 시상분야, 선정인원 등 창의행정상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견조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기관,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었거나 권리를 취득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7조(부상 등) ① 시장은 창의행정상 수상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등의 부상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장 및 부상 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르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하는 등 거짓의 방법으로 수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장은 시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포상금 등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 시장은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9조(우수제안 추천) 시장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중앙 우수제안 대상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관리) 시장은 공무원 등의 제안에 대하여 분야별·수준별로 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도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자 등의 참여) 시장은 채택제안이 업무담당 기관에서 실행될 경우 그 과정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의 평가)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성과를 업무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제안의 활성화 노력) 시장은 공무원 등이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학습활동의 지원) 시장은 공무원의 학습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창의상(상장 및 포상금 등의 부상과 인사상 특전을 포함한다)을 수상한 공무원 등은 이 조례 제5조에서 제9조까지에 따른 창의행정상을 수상한 것으로 본다.

[별표]

창의행정상 포상금(제7조제2항 관련)

등 급	부문별 포상금	
	창의제안	창의실행
대 상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8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최우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우 수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장 려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포상금은 위 표에서 정한 부문별 포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창의행정의 새로운 정의와 공무원 제안 활성화를 위해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여 전부개정
-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하여, 아이디어 제안체계의 근간을 활성화하고 창의행정 구현의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 (창의행정)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든 활동
- (학습활동) 공무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나 문제에 대한 지식을 창출·공유하고 직무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

나. 창의행정 제안 대상에 ‘서울특별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규정

다. 창의행정상 선정(제5조)

- 창의적인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출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창의행정상 시상

라. 제안의 관리 및 실시성과 평가(제10조~12조)

- 분야별·수준별 제안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택제안 실시성과를 업무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조례 제9279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충분한” 을 “충분하며 안전한”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위촉직 위원” 을 “위촉위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되고” 를 “맡고” 로, “된다” 를 “맡는다” 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모두” 를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로, “때는” 을 “때에는” 으로, “대리한다” 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중 시민건강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로 한다.

제26조제3항 본문 중 “서면으로 통보” 를 “통보”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을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분기” 를 “분기별” 로, “할” 을 “개최할” 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33조 본문 중 “출석한 자에 대하여” 를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로 한다.

제34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35조 중 “2024년 9월 21일” 을 “2027년 9월 30일” 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6667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산을 위해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장 직무대행 단서 신설 및 사전 지명권 명확화 (제24조)
- 나.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조문 구체화 및 명확화(제32조)
- 다. 위원의 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제33조)
- 라.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 (제3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80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 를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그의” 를 “그가” 로, “보관에 속하는” 을 “보관하는” 으로, “형식을 빌어” 를 “형식으로”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직영기업” 을 “직영기업이나”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을 “제1호의 금고를” 로 한다.

제3조 중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으로, “지방공기업법” 을 “「지방공기업법」” 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금고의 약정기간)” 을 “(금고약정 기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금고의 약정기간은” 을 “금고약정 기간은” 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금고의 지정방법)” 을 “(금고지정 방법)”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 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 으로, “위촉하되” 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위촉된” 을 “임명 또는 위촉된”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 를 “하나의 사안을 심의·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을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맡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맡는다.

제12조제1항 중 “금고 참여의사” 를 “금고지정에 참여의사” 로, “공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를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로 한다.

제13조 중 “금융기관에서” 를 “금융기관이” 로,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을 “정부기관 (금융감독원 등) 또는” 으로, “자료와” 를 “자료 및 제7조에 따른 평가기준과” 로, “작성,” 을 “작성하여”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시보” 를 “서울시보” 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를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금고 지정·운영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기피 규정 및 회피 규정과 금고지정 절차 관련 공정성 미비 조항을 개정하여 금고 지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기피 여부를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함(제10조제2항)
- 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이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함(제10조제3항)
- 다. 금융기관에 대한 금고지정 관련 통지를 의무적 절차로 변경함(제12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81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기후동행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서울대공원 및 서울식물원 입장료를 감면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입장료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는 대상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 신설(제20조제2항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282호**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4호) 중 “이란 조기경보지수 외의”를 “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작성·배포”를 “성별, 연령 등 시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배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30명”을 “20명”으로, “구성한다”를 “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명하거나”를 “임명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경제정책실장이 맡는다.

제11조제2항 중 “반기별 1회씩 개최하되,”를 “경제상황 모니터링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하거나”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경우에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시 해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6항 중 “담당 과장이 된다”를 “담당사무관이 맡는다”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 ① 위원회에서 이상징후가 경제위기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1항제2호의 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대응시책에 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서울 경제상황 진단 방법을 현실화 하고, 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세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기경보지수”를 삭제하고 “정량·정성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 나. 위기 상황별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 다. “경제위기대책본부”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 단계별 대응 주체 세분화

◆ 서울특별시조례 제9283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휴양·안전후생”을 “보건·휴양·안전·후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선택적복지제도 설계·운영시”를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휴직중”을 “휴직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건중”을 “과건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이하 “위원회 “”를 “이하 “위원회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에”를 “소속공무원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노력 하여야”를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원후생복지”를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휴게실·구내식당·매점”을 “휴게실·구내식당·매점·카페·자동판매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무실·치과진료실·체력단련실”을 “부속 의료기관·체력단련실·심리상담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의 확보 운영”을 “등”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직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청매점”을 “매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우수·효행공무원”을 “우수·효행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직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속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직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소속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출산직원”을 “출산한 소속공무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중 “소속 공무원”을 각각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후생복지용 아파트의 임대, 관리, 수리 등

나. 주택 임차보증금의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15.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제8조의 제목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을”을 “운영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6조에서”를 “제6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에서”를 “제7조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와 제9조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후생복지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후생복지 제도 현행화 및 불분명한 용어·표현 재정비로 조례상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와 중복적인 시행규칙을 조례로 통합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범위 현행화(제6조)
- 나.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범위 현행화(제6조)
- 다.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용어·표현 재정비(제7조 및 제9조)
- 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신설(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84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항제24호”를 “법 제2조제1항제23호”로, “가산금”을 “가산세”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를 “이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한다.

제4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조”를 “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로, “대리인의 선정”을 “대리인 지정”으로, “규칙”을 “시장에게 규칙”으로, “선정 신청서”를 “지정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청구인등”을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를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체납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가산금이 포함된 부과 분의 경우 가산금을 가산세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상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소액체납액 가산세 면제기준 상향에 맞추어 일반우편 송달금액기준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고액체납액 범위를 기존 ‘가산금’ 제외에서 ‘가산세’ 제외로 변경(제3조제2항제4호)
- 나. 일반우편으로 송달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제7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85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전시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시 출연기관이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 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을 “기획전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
2.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
- ④ 제3항에 따른 할인관람료는 관람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의 제목 “(무료관람)” 을 “(무료 관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다둥이” 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둥이” 로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경우에도” 를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16조제5항 단서 중 “허가” 를 “대관허가”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주의 의무” 를 “주의의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인 없이” 을 “승인없이” 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원상 복구” 를 “원상복구” 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대여허가조건” 을 “대여허가 조건” 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상호 간” 을 “상호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상” 을 “이상의”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대관 허가” 를 “대관허가” 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때” 를 “때에” 로 한다.

제31조제3항 단서 중 “3분의2이상의” 을 “3분의2 이상의” 으로 한다.

제32조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해당업무” 를 “해당 업무”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위탁 할” 을 “민간위탁할”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람료 할인 대상에 추가하여 시 주요사업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대상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추가함(제8조제3항 및 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286호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제3조의2를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제10조로 하며, 제6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8조를 제5조로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4조의2를 제17조로 하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 “(기능)”을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8호 중 “시장 또는”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심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의 각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학술용역의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중전의 제3조)의 제목 “(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사람 중에서”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의회 의장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위원장)”을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3항) 중 “위원장”을 “심의회 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회의는”을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회 회의”를 “회의”로, “제3조제2항”을 “제4조”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회 회의”를 “회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중전의 제6조)제6항 중 “심의회 회의”를 “회의의”로, “된다”를 “각각 맡는다”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9조)제2항 중 “안건”을 “의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외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1조) 중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공무원, 전문가”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2조)제3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5조)제2항 중 “의회에”를 “시의회에”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6조) 중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는”을 “회의에 참석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촉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각 시도에 개정 권고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의 입안기준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체계 정비

2. 주요내용

- 가. 위촉위원 성별 고려(제4조)
 -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
- 나. 위촉위원 비율 규정(제9조제3항)
 - 위촉직 위원의 수를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규정
- 다.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제3조~제1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87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중 시장은”을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중부·남부기술교육원”을 “기술교육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1항”으로,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해”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3호 및 별표 개정 규정은 2025. 3. 1.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동부, 중부, 남부, 북부) 통합 운영에 따라 교육원 명칭을 변경하고, 남부기술교육원 운영 중단(2026. 3. 1.부터)에 따라 운영기간을 명시함

2. 주요내용

- 가.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에 따라 각 기술교육원의 명칭을 변경(제5조, 별표)

[별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칭	위치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동부캠퍼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83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6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북부캠퍼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81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는 2026. 2. 28.까지만 운영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9288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6호까지 및 제1의2호”를 “제6호까지”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5조의2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의2호”를 “제4조제2호”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취소에 관하여”를 “취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2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하거나 줄일”을 “감경하거나 면제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제1항제1의2호”를 “제18조제1항제2호”로, “면제하거나 줄일”을 “감경하거나 면제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줄인다”를 각각 “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하거나 줄일”을 “감경하거나 면제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중 “줄인다”를 각각 “줄임”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23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7호까지 및 제1의2호” 를 “제7호까지” 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여성관련시설” 을 “필요한 경우 여성관련시설” 로, “관하여 필요한 경우” 를 “대하여” 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7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여성능력개발원 명칭 및 위치(제7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동작구 노량진로 10(대방동)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종료 및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이전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여성공예센터 관련 규정 삭제(제4조제2호, 제6조, 제18조제1항제2호, 별표 2, 별표 7)
- 나.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주소 변경(별표 3)
- 다. 이용료 반환 규정 구체화(제2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28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의2” 를 “제9조” 로 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을 “경제실, 복지실, 교통실” 로, “시민건강국” 을 “시민건강국, 민생노동국, 디지털도시국” 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주택정책실” 을 “민생사법경찰국, 재난안전실, 주택실” 로, “푸른도시여가국” 을 “정원도시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경제실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조산업기획관을, 복지실 밑에 복지기획관, 돌봄·고독정책관을, 교통실 밑에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관을, 재난안전실 밑에 도로기획관을 두고, 주택실 밑에 주택정책관, 건축기획관을 둔다.

제5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경제정책실)” 을 “(경제실)”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정책실장” 을 “경제실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9호, 제5호 및 제8호로 한다.

4. 대학 활성화 정책 및 캠퍼스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복지정책실)” 을 “(복지실)”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정책실장” 을 “복지실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제6호,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3호) 중 “복지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지역사회” 를 “지역사회” 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을 “장애인”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장애인 거주시설·활동지원·인권·권익에 관한 사항
7. 사회적 고독·고립 문제 대응,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9. 1인가구 문제 대책 수립 및 1인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도시교통실)” 을 “(교통실)”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교통실장” 을 “교통실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운영·관리” 를 “운영·관리, 주차차위 반 등 교통단속업무 총괄” 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호 중 “문화재 보존정책” 을 “국가유산 보존정책” 으로, “문화재 활용” 을 “국가유산 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 복원 및 관리” 를 “국가유산 활용 및 복원” 으로 한다.

제12조의2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관리” 를 “관리, 공중위생의 관리” 로 한다.

2. 서울형 헬스케어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민생노동국) 민생노동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동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보호·물가안정·사회적경제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유통 및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2조의4(디지털도시국) 디지털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계획 수립, 디지털 행정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통계의 수집·분석·활용 등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정책 및 통신인프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의 제목 “(디자인정책관)” 을 “(민생사법경찰국)”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정책관” 을 “민생사법경찰국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디자인진흥정책 수립·시행” 을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 단속”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유관기관 협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의 제목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차도) 관리, 도로 등 설해 대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 도로 부속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의 제목 “(주택정책실)”을 “(주택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2. 임대주택 정책수립 시행, 매입·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의 제목 “(푸른도시여가국)”을 “(정원도시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푸른도시여가국장”을 “정원도시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130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44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를 삭제하고, 부칙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중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자원회수시설추진단”으로 하고, “2024년 8월 18일”을 “2027년 8월 18일”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876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로 하고, “2024년 7월 16일”을 “2027년 7월 16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민생사법경찰단” 을 “민생사법경찰국” 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나목 중 “경제정책실” 을 “경제실” 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다목 중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을 “민생노동국” 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나목 중 “푸른도시여가국” 을 “정원도시국” 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가목 중 “복지정책실” 을 “복지실” 로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가목 중 “재난안전관리실” 을 “재난안전실” 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가목 중 “주택정책실” 을 “주택실” 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다목 중 “디지털정책관” 을 “디지털도시국” 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0호가목 중 “도시교통실” 을 “교통실” 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 중 “복지정책실장” 을 “복지실장”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및 복지정책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및 복지실장” 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택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을 “주택실장, 복지실장” 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복지정책실장” 을 “복지실장” 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정책실장” 을 “복지실장” 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정책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을 “복지실장, 민생노동국장” 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복지정책실장” 을 “복지실장” 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정책실장” 을 “복지실장” 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정책실장” 을 “주택실장” 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정책실장” 을 “경제실장” 으로 한다.

- ⑩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나목 중 “경제정책실장” 을 “경제실장” 으로 한다.
- ⑪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정책실장” 을 “경제실장” 으로 한다.
- ⑫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정책실장” 을 “경제실장” 으로 한다.
- ⑬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을 “민생노동국장” 으로 한다.
- ⑭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을 “민생노동국장” 으로 한다.
- ⑮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을 “민생노동국장” 으로 한다.
- ⑯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을 “민생노동국장” 으로 한다.
- ⑰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을 “민생노동국장” 으로 한다.
- ⑱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디지털정책관” 을 “디지털도시국장” 으로 한다.
- ⑲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디지털정책관” 을 “디지털도시국장” 으로 한다.
- ⑳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디지털정책관” 을 각각 “디지털도시국장”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디지털정책관” 을 “디지털도시국장”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디지털정책관” 을 “디지털도시국장” 으로 한다.
- ㉑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디지털정책관” 을 “디지털도시국장” 으로 한다.

- 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주택정책실” 을 “주택실” 로 한다.
- 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3항 중 “주택정책실장” 을 “주택실장” 으로 한다.
- ㉖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주택정책실장” 을 “주택실장” 으로 한다.
- ㉗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도시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여가국장” 을 “재난안전실장, 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과 정원도시국장”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교통실장” 을 “교통실장”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푸른도시여가국장” 을 “정원도시국장” 으로 한다.
별표 1의 관리자란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하고, “도시교통실장” 을 “교통실장” 으로 하며, 같은 별표의 비고 나목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 ㉘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푸른도시여가국장” 을 “정원도시국장” 으로 한다.
- ㉙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실” 을 “재난안전실” 로 한다.
- ㉚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교통실장” 을 “교통실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안전관리실” 을 “재난안전실” 로 한다.
- ㉛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 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 ㉓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총괄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 ㉔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8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 ㉕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 ㉖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리청란 중 “안전총괄실장” 을 “재난안전실장” 으로 한다.
- ㉗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교통실장” 을 “교통실장” 으로 한다.
- ㉘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교통실장” 을 “교통실장”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도시교통실” 을 “교통실” 로 한다.
- ㉙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도시교통실” 을 “교통실” 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교통실장” 을 “교통실장”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시교통실” 을 “교통실” 로 한다.
- ㉚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교통실장” 을 “교통실장” 으로 한다.
- ㉛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중 “도로교통사업소장” 을 각각 “도로사업소장”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도로 관리사업소장” 을 “도로사업소장” 으로 한다.
- 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제정책실” 을 “경제실” 로 하고, “복지정책실” 을 “복지실” 로 하며, “도시교통실” 을 “교통실” 로 하고,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을 “민생노동국” 으로 하며, “재난안전관리실” 을 “재난안전실” 로 하고, “주택정책실” 을 “주택실” 로 하며, “푸른도시여가국” 을 “정원도시국” 으로 한다.
- ㉝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도시교통실장” 을 “교통실장” 으로 한다.

④2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교통실장” 을 “교통실장” 으로 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율신설기구 관련 기구 정비, 3급 기구 자율화, 실국명칭 변경, 한시기구 정비 등 일부 개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929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10,521명” 을 “10,520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226명” 을 “227명” 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 무 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11,730					
정무직 계	4					
시 장	1	1				
부시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일반직 계	10,700					
1급	7	6	1			
2·3급	26	21		1	3	1
3급	25	15		1	9	
3·4급	3	2				1
4급	269	164	19	8	71	7
4·5급	2	1				1
5급 이하 소계	10,208					
전문경력관 소계	160					
별정직 계	37					
4급상당	5	3	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연구직 계	410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 무 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 의 계 행정기관
연구관	73	8		41	24	
연구사	337					
지도직 계	25					
지도관	3			3		
지도사	22					
교육공무원 계	554					
총 장	1			1		
교수 등	476			476		
조 교	77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2일까지 일반직 4급 계는 270으로 하고 4급 본청은 165로 하며, 5급 이하 소계는 10,207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율신설기구·한시기구 정비 및 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직급조정 등 일부 개정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629호****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여성공예센터, 여성능력개발원”을 “여성능력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스페이스 살림”을 “서울가족플라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반기”를 “반기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월 80퍼센트 이상”을 “80퍼센트 이상의 일수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0조 중 “별표 3까지 및 별표 1의2”를 “별표 3까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21조에 따라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을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허가”를 “조례 제21조제3호에 따라 이용허가”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의2를 별표 2(중전의 별표1의2)로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서울가족플라자 이용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대관시설 이용료

구분	이용료(원)	사용기준	비고
다목적홀	60,000	1시간	1. 18:00 이후 야간 및 일, 공휴일의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총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2. 1시간 미만 초과 시 1시간 단위로 이용료 가산함.
교육장	25,000	1시간	

2. 장비 이용료

구분	이용료(원)	사용기준	비고
PROJECTOR	30,000	1회	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2. 장비 반출 불가 3. 오퍼레이션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서울여성플라자 부속설비 이용료 유사 성격 장비 이용료 기준 적용
녹음장비	20,000	1회	
촬영장비	카메라	10,000	
	모니터	10,000	
노트북	10,000	1회	

3. 교육 및 시설 이용료

구분	이용료(원)	사용기준	비고
공유좌석이용료	30,000	월	
공유부엌이용료	10,000	1시간	1. 재료비 자부담 2. 부엌 내 집기 파손 시 시중가의 1/10 이내 수준에서 청구함.
시민평생교육 프로그램	30,000 이내	회	1. 이용료 상한액 2. 무료 시 재료비 자부담

4. 주차장 이용료

구분	시간	이용료(원)	비고
주차요금	30분	1,000	1. 일반차량 기준 2. 부과세 포함
	1시간	2,000	
	2시간	4,000	
	월	100,000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종료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공예센터 관련 규정 삭제(제2조, 별표 2)

나. 여성공예센터 관련 단서 삭제(제4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63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조례와 주요내용이 중복되는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 통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 운영 등)를 조례에 통합하고 이외 단순 중복되는 시행규칙을 폐지함

서울특별시교육청**[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4-190호****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가. 2024.7.1.자 유보통합추진단 신설 등을 위한 분장사무 명시
- 나. 보건안전진흥원 기능 강화(보건, 급식, 환경, 산업안전 등)에 따른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
- 다. 부서 간 분장사무 조정, 신규업무 반영,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및 중복표현 정리 등을 위한 사무 정비 추진

2. 주요내용

- 가. 부교육감 직속 「유보통합추진단」 신설(안 제3조)
- 나. 유보통합추진단 신설에 따른 단장 직급 및 분장사무 신설(안 제7조의2)
- 다. 교육연구정보원의 부서 간 업무 조정 등 사무정비 추진(안 제14조제3항, 제17조 및 제18조)
- 라. 보건안전진흥원 내 「안전환경부」 및 부장 직급 신설(안 제41조)
- 마. 안전환경부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조정
 - － 행정지원과(안 제42조), 산업안전보건지원과(안 제43조), 보건급식부 내 환경지원과(안 제44조) 분장사무를 신설된 안전환경부로 이관(안 제41조의 2)
- 바. 교육시설관리본부 분장사무 신설 및 현행화(안 제50조 및 제51조)
- 사. 법률의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 제8692호 부칙 제2조와 중복 조항인 규칙 제1059호 제2조 삭제
(한시기구인 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간 관련)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10층 행정관리담당관 (우 03178)

○ 이메일: bmw7289@sen.go.kr (※ 문의: 전화 02-2282-8643)

4. 개정규칙안: 붙임 참조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전총괄담당관”을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유보통합추진단) ① 유보통합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유보통합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유보통합 업무 총괄
2. 서울시 및 자치구 영유아보육 사무 이관 추진
3.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통합모델 운영에 관한 사항
5.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6. 유보통합 현장 자문단 운영
7. 영유아보육 사무 이관 대비 협의체 운영
8. 유보통합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9. 유보통합 정책 홍보
10. 그 밖의 유보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독서교육 지원 플랫폼 및 학교도서관시스템(DLS)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호 중 “교육과정”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학생정보통신기술 활용 경진대회”를 “디지털 활용 연구대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 산업안전보건지원과”를 “안전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보건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를 “안전환경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안전환경부) ① 안전환경부에 행정지원과, 산업안전보건지원과 및 환경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보건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환경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4.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

7. 의무기록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산업안전보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4.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지원 및 통계관리
 5. 근로자 건강관리 사업 실시
 6.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⑤ 환경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환경위생 조사·연구·평가·통계·홍보·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 환경위생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실내 공기질 표본 및 특별 점검
 4. 대기오염 대응 및 교육·홍보
 5. 학교 석면조사 및 위해성 평가 지원 사업
 6. 학교 먹는 물 표본 및 특별점검
 7. 학교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지원 사업
 8. 학교 교실 청소용역 지원 사업
 9. 학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사업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중 “보건지원과, 환경지원과”를 “보건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지원과장, 환경지원과장”을 “보건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4항제6호 중 “시설 민간위탁용역”을 “시설관리 용역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학교 수영장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제51조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학교시설보수반 지원 예약 시스템 운영

규칙 제105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보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대변인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총무과, <u>안전총괄담당관</u> 을 둔다.	제3조(보조·보좌기관) ----- ----- ----- <u>안전총괄담당관</u> , <u>유보통합추진단</u> ----- -----.
<신 설>	제7조의2(유보통합추진단) ① <u>유보통합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u> ② <u>유보통합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u> 1. <u>유보통합 업무 총괄</u> 2. <u>서울시 및 자치구 영유아보육 사무 이관 추진</u> 3. <u>교육·보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u> 4. <u>통합모델 운영에 관한 사항</u> 5. <u>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u> 6. <u>유보통합 현장 자문단 운영</u> 7. <u>영유아보육 사무 이관 대비 협의체 운영</u> 8. <u>유보통합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u> 9. <u>유보통합 정책 홍보</u> 10. <u>그 밖의 유보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u>

제14조(총무부) ①·② (생략)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④·⑤ (생략)

제17조(교육과정진로진학부)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에 관한 사항

2. ~ 10. (생략)

제18조(교수학습정보부) 교수학습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학생정보통신기술 활용 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7. 도서정보시스템(DLS) 및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8. ~ 10. (생략)

제14조(총무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독서교육 지원 플랫폼 및 학교도서관시스템(DLS) 관리에 관한 사항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교육과정진로진학부) ----

-----.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

2. ~ 10. (현행과 같음)

제18조(교수학습정보부) -----

-----.

1.·2. (현행과 같음)

3. 디지털 활용 연구대회 -----

4. ~ 6. (현행과 같음)

<삭제>

8. ~ 10. (현행과 같음)

제4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
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에 행정
지원과, 산업안전보건지원과 및
보건급식부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보건지원과장은 지방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건급식
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
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 설>

제41조(하부조직) ① -----
----- 안전환
경부 -----
-----.

② 안전환경부장은 지방서기관
으로-----

-.

제41조의2(안전환경부) ① 안전환
경부에 행정지원과, 산업안전보
건지원과 및 환경지원과를 둔
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보건지원과장은 지방
교육행정사무관으로, 환경지원
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
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
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
항
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
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4.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

7. 의무기록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4.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지원 및 통계관리

5. 근로자 건강관리 사업 실시

6.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⑤ 환경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환경위생 조사·연구·평가·통계·홍보·교육·지

원에 관한 사항

2. 학교 환경위생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실내 공기질 표본 및 특별 점검
4. 대기오염 대응 및 교육·홍보
5. 학교 석면조사 및 위해성 평가 지원 사업
6. 학교 먹는 물 표본 및 특별 점검
7. 학교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지원 사업
8. 학교 교실 청소용역 지원 사업
9. 학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사업

<삭 제>

제42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4.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

산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

7. 의무기록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3조(산업안전보건지원과) 산업안전보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4.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지원 및 통계관리

5. 근로자 건강관리 사업 실시

6.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44조(보건급식부) ① 보건급식부에 보건지원과, 환경지원과, 급식품질위생과 및 식생활지원과를 둔다.

② 보건지원과장, 환경지원과장 및 급식품질위생과장은 지방

<삭 제>

제44조(보건급식부) ① -----
 --- 보건지원과-----

 -----.

② 보건지원과장 -----

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으로, 식생활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
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
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
다.

③ (생 략)

④ 환경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분장한다.

1. 학교 환경위생 조사·연구·
평가·통계·홍보·교육·지
원에 관한 사항
2. 학교 환경위생 관련 유관기
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실내 공기질 표본 및
특별 점검
4. 대기오염 대응 및 교육·홍
보
5. 학교 석면조사 및 위해성 평
가 지원 사업
6. 학교 먹는 물 표본 및 특별
점검
7. 학교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지원 사업
8. 학교 교실 청소용역 지원 사
업
9. 학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
전관리 사업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⑥ (생 략)

제50조(총무부) ① ~ ③ (생 략)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공립 각급학교 시설 민간위탁용역 총괄 계획 수립 및 조정

7. (생 략)

<신 설>

제51조(시설관리부) ①·② (생 략)

③ 시설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공립 각급학교 시설 민간위탁용역 학교 기술 지원

7. (생 략)

④·⑤ (생 략)

⑥ 지원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학교시설개선 신고센터 운영

4. 학교의 재활용 자재관리 및 운영

⑤·⑥ (현행과 같음)

제50조(총무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5. (현행과 같음)

6. ----- 시설관리 용역 지원 -----

7. (현행과 같음)

8. 학교 수영장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제51조(시설관리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1.·2. (현행과 같음)

3. 학교시설보수반 지원 예약 시스템 운영

<삭 제>

5. · 6. (생 략) ⑦ (생 략) 부칙 <규칙 제1059호> 제1조(시행일) (생 략) <u>제2조(한시기구) 제11조제7항의</u> <u>개정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u> <u>시기구의 존속기간은 2026년 2</u> <u>월 28일까지로 한다.</u>	5. · 6.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부칙 <규칙 제1059호>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4년 5월 일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4-191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가. 2024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일부 조정하며,
- 나. 일반직공무원 정·현원 불일치 해소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반직공무원 단위기관별 정원 조정
 - 본청(직속기관 포함)
 - ： 4급 (중)2명, 5급 (감)2명, 6급 (중)16명, 7급 (중)1명, 8급 (감)5명, 계 (중)12명
 - 교육지원청
 - ： 6급 (중)2명, 7급 (중)7명, 8급 (중)2명, 계 (중)11명
 - 각급학교
 - ： 6급 (중)24명, 7급 (감)19명, 8급 (감)28명, 계 (감)23명
- 나. 일반직공무원 직렬별·직급별 정원 조정
 - 4급: 서기관 (중)2명, 계 (중)2명
 - 5급: 교육행정 5급 (감)2명, 계 (감)2명
 - 6급: 교육행정 6급 (중)18명, 시설관리 6급 (감)1명, 전기운영 6급 (중)7명, 열관리운영 6급 (중)12명, 사무운영 6급 (중)6명, 계 (중)42명
 - 7급: 교육행정 7급 (중)8명, 시설 7급 (중)1명, 전기운영 7급 (감)5명, 열관리운영 7급 (감)12명, 사무운영 7급 (감)3명, 계 (감)11명
 - 8급: 교육행정 8급 (감)21명, 시설관리 8급 (감)4명, 전기운영 8급 (감)3명, 사무운영 8급 (감)3명, 계 (감)31명
- 다. 특정직공무원 정원 조정
 - 본청(직속기관 포함): 장학관·교육연구관 (중) 1명, 장학사·교육연구사 (감) 1명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10층 행정관리담당관 (우 03178)

○ 이메일: jeunsan@sen.go.kr(※ 문의: 전화 02-2282-8644)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722	6	1,826	1,366	4,524
정무직	정무직 계	1	-	1	-	-
	교육감	1	-	1	-	-
일반직	일반직 계	7,125	6	1,544	1,051	4,524
	2·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	1	-	-
	3급 부이사관	9	-	9	-	-
	3·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	3	-	-
	4급	소계	44	33	11	-
		서기관	39	29	10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4	1	-
	4·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7	-	7	-	-
	5급	소계	338	1	151	131
		교육행정	248	1	89	117
		행정	6	-	6	-
		사서	30	-	30	-
		보건	1	-	1	-
		교육행정 또는 행정	10	-	4	6
		교육행정 또는 사서	6	-	6	-
		교육행정 또는 보건	8	-	3	2
		교육행정 또는 시설	2	-	2	-
		공업 또는 시설	20	-	9	11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6	-	-	6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	-	1	-
	6급	소계	1,958	5	519	1,148
		교육행정	1,252	5	222	863
		전산	51	-	29	22
		사서	131	-	120	11
		공업	12	-	10	-
		녹지	1	-	1	-
		보건	19	-	9	10
		식품위생	6	-	4	2
		간호	5	-	5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 반 직		시설	41	-	18	23	-
		방송통신	1	-	1	-	-
		시설관리	287	-	43	11	233
		운전	5	-	2	-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10	-	4	-	6
	6급	열관리운영	22	-	12	-	10
		사무운영	61	-	24	12	25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방호 또는 시설관리	3	-	3	-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1	9	-
	7급	소계	2,684	-	581	466	1,637
		교육행정	1,638	-	255	322	1,061
		전산	58	-	47	11	-
		사서	173	-	173	-	-
		공업	20	-	8	12	-
		녹지	1	-	1	-	-
		보건	31	-	17	14	-
		간호	5	-	5	-	-
		시설	49	-	20	29	-
		시설관리	522	-	20	15	487
		운전	12	-	3	6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140	-	21	33	86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8	-	3	15	-
		보건 또는 식품위생	2	-	2	-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방호 또는 시설관리	4	-	2	2	-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8	-	1	7	-
	8급	소계	2,060	-	230	222	1,608
		교육행정	1,289	-	67	118	1,104
		전산	24	-	13	11	-
		사서	85	-	85	-	-
		공업	14	-	2	12	-
		보건	21	-	4	17	-
		시설	50	-	8	42	-
		시설관리	547	-	43	6	498
		운전	12	-	1	5	6
		전기운영	-	-	-	-	-
일 반 직	8급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5	-	5	-	-
		공업 또는 시설	11	-	-	11	-
		보건 또는 간호	1	-	1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9급	소계	-	-	-	-	-
		시설관리	-	-	-	-	-
		운전	-	-	-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전문 경력관	소계	7	-	7	-	-
		가군	1	-	1	-	-
		비상계획관	1	-	1	-	-
		나군	2	-	2	-	-
		교육영상물제작PD	1	-	1	-	-
		평생교육사	-	-	-	-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학생수련지도사	1	-	1	-	-
		다군	4	-	4	-	-
		속기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4	-	4	-	-
	연구사	소계	14	-	3	11	-
		학예연구	1	-	1	-	-
		기록연구	13	-	2	11	-
별 정 직	별정직 계		8	-	8	-	-
	4급 상당(비서)		1	-	1	-	-
	5급 상당(비서)		4	-	4	-	-
	6급 상당(비서)		3	-	3	-	-
특 정 직	특정직 계		588	-	273	315	-
	장학관 · 교육 연구관	소계	124	-	68	56	-
		3급 상당	17	-	6	11	-
		4급 상당	34	-	23	11	-
		5급 상당	73	-	39	34	-
	장학사 · 교육 연구사		464	-	205	259	-

신 · 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722	6	1,814	1,355	4,547	총계		7,722	6	1,826	1,366	4,524
정 무 직	정무직 계	1	-	1	-	-	정 무 직	정무직 계	1	-	1	-	-
	교육감	1	-	1	-	-		교육감	1	-	1	-	-
일 반 직	일반직 계	7,125	6	1,532	1,040	4,547	일 반 직	일반직 계	7,125	6	1,544	1,051	4,524
	2·3급	1	-	1	-	-		2·3급	1	-	1	-	-
	3급	9	-	9	-	-		3급	9	-	9	-	-
	3·4급	3	-	3	-	-		3·4급	3	-	3	-	-
	4급	42	-	31	11	-		4급	44	-	33	11	-
	4·5급	340	1	153	55	131		4·5급	338	1	151	55	131
	5급	250	1	91	41	117		5급	248	1	89	41	117
	6급	51	-	29	22	-		6급	51	-	29	22	-
	7급	131	-	120	11	-		7급	131	-	120	11	-
	8급	12	-	10	-	2		8급	12	-	10	-	2
	9급	1	-	1	-	-		9급	1	-	1	-	-
	10급	19	-	9	10	-		10급	19	-	9	10	-
	11급	6	-	4	-	2		11급	6	-	4	-	2
	12급	1	-	1	-	-		12급	1	-	1	-	-
	13급	1	-	1	-	-		13급	1	-	1	-	-
	14급	1	-	1	-	-		14급	1	-	1	-	-
	15급	1	-	1	-	-		15급	1	-	1	-	-
	16급	1	-	1	-	-		16급	1	-	1	-	-
	17급	1	-	1	-	-		17급	1	-	1	-	-
	18급	1	-	1	-	-		18급	1	-	1	-	-
	19급	1	-	1	-	-		19급	1	-	1	-	-
	20급	1	-	1	-	-		20급	1	-	1	-	-
	21급	1	-	1	-	-		21급	1	-	1	-	-
	22급	1	-	1	-	-		22급	1	-	1	-	-
	23급	1	-	1	-	-		23급	1	-	1	-	-
	24급	1	-	1	-	-		24급	1	-	1	-	-
	25급	1	-	1	-	-		25급	1	-	1	-	-
	26급	1	-	1	-	-		26급	1	-	1	-	-
	27급	1	-	1	-	-		27급	1	-	1	-	-
	28급	1	-	1	-	-		28급	1	-	1	-	-
	29급	1	-	1	-	-		29급	1	-	1	-	-
	30급	1	-	1	-	-		30급	1	-	1	-	-
	31급	1	-	1	-	-		31급	1	-	1	-	-
	32급	1	-	1	-	-		32급	1	-	1	-	-
	33급	1	-	1	-	-		33급	1	-	1	-	-
	34급	1	-	1	-	-		34급	1	-	1	-	-
	35급	1	-	1	-	-		35급	1	-	1	-	-
	36급	1	-	1	-	-		36급	1	-	1	-	-
	37급	1	-	1	-	-		37급	1	-	1	-	-
	38급	1	-	1	-	-		38급	1	-	1	-	-
	39급	1	-	1	-	-		39급	1	-	1	-	-
	40급	1	-	1	-	-		40급	1	-	1	-	-
	41급	1	-	1	-	-		41급	1	-	1	-	-
	42급	1	-	1	-	-		42급	1	-	1	-	-
	43급	1	-	1	-	-		43급	1	-	1	-	-
	44급	1	-	1	-	-		44급	1	-	1	-	-
	45급	1	-	1	-	-		45급	1	-	1	-	-
	46급	1	-	1	-	-		46급	1	-	1	-	-
	47급	1	-	1	-	-		47급	1	-	1	-	-
	48급	1	-	1	-	-		48급	1	-	1	-	-
	49급	1	-	1	-	-		49급	1	-	1	-	-
	50급	1	-	1	-	-		50급	1	-	1	-	-
	51급	1	-	1	-	-		51급	1	-	1	-	-
	52급	1	-	1	-	-		52급	1	-	1	-	-
	53급	1	-	1	-	-		53급	1	-	1	-	-
	54급	1	-	1	-	-		54급	1	-	1	-	-
	55급	1	-	1	-	-		55급	1	-	1	-	-
	56급	1	-	1	-	-		56급	1	-	1	-	-
	57급	1	-	1	-	-		57급	1	-	1	-	-
	58급	1	-	1	-	-		58급	1	-	1	-	-
	59급	1	-	1	-	-		59급	1	-	1	-	-
	60급	1	-	1	-	-		60급	1	-	1	-	-
	61급	1	-	1	-	-		61급	1	-	1	-	-
	62급	1	-	1	-	-		62급	1	-	1	-	-
	63급	1	-	1	-	-		63급	1	-	1	-	-
	64급	1	-	1	-	-		64급	1	-	1	-	-
	65급	1	-	1	-	-		65급	1	-	1	-	-
	66급	1	-	1	-	-		66급	1	-	1	-	-
	67급	1	-	1	-	-		67급	1	-	1	-	-
	68급	1	-	1	-	-		68급	1	-	1	-	-
	69급	1	-	1	-	-		69급	1	-	1	-	-
	70급	1	-	1	-	-		70급	1	-	1	-	-
	71급	1	-	1	-	-		71급	1	-	1	-	-
	72급	1	-	1	-	-		72급	1	-	1	-	-
	73급	1	-	1	-	-		73급	1	-	1	-	-
	74급	1	-	1	-	-		74급	1	-	1	-	-
	75급	1	-	1	-	-		75급	1	-	1	-	-
	76급	1	-	1	-	-		76급	1	-	1	-	-
	77급	1	-	1	-	-		77급	1	-	1	-	-
	78급	1	-	1	-	-		78급	1	-	1	-	-
	79급	1	-	1	-	-		79급	1	-	1	-	-
	80급	1	-	1	-	-		80급	1	-	1	-	-
	81급	1	-	1	-	-		81급	1	-	1	-	-
	82급	1	-	1	-	-		82급	1	-	1	-	-
	83급	1	-	1	-	-		83급	1	-	1	-	-
	84급	1	-	1	-	-		84급	1	-	1	-	-
	85급	1	-	1	-	-		85급	1	-	1	-	-
	86급	1	-	1	-	-		86급	1	-	1	-	-
	87급	1	-	1	-	-		87급	1	-	1	-	-
	88급	1	-	1	-	-		88급	1	-	1	-	-
	89급	1	-	1	-	-		89급	1	-	1	-	-
	90급	1	-	1	-	-		90급	1	-	1	-	-
	91급	1	-	1	-	-		91급	1	-	1	-	-
	92급	1	-	1	-	-		92급	1	-	1	-	-
	93급	1	-	1	-	-		93급	1	-	1	-	-
	94급	1	-	1	-	-		94급	1	-	1	-	-
	95급	1	-	1	-	-		95급	1	-	1	-	-
	96급	1	-	1	-	-		96급	1	-	1	-	-
	97급	1	-	1	-	-		97급	1	-	1	-	-
	98급	1	-	1	-	-		98급	1	-	1	-	-
	99급	1	-	1	-	-		99급	1	-	1	-	-
	100급	1	-	1	-	-		100급	1	-	1	-	-

현행							개정안						
구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구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간호	5	-	5	-	-	일반직	간호	5	-	5	-	-
	시설	41	-	18	23	-		시설	41	-	18	23	-
	방송통신	1	-	1	-	-		방송통신	1	-	1	-	-
	시설관리	288	-	43	11	234		시설관리	287	-	43	11	233
	운전	5	-	2	-	3		운전	5	-	2	-	3
	통신운영	1	-	1	-	-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3	-	1	-	2		전기운영	10	-	4	-	6
	열관리운영	10	-	8	-	2		열관리운영	22	-	12	-	10
	사무운영	55	-	20	12	23		사무운영	61	-	24	12	25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방호 또는 시설관리	3	-	3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3	-	3	-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1	9	-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1	9	-
	소계	2,695	-	580	459	1,656		소계	2,684	-	581	466	1,637
	교육행정	1,630	-	247	316	1,067	7급	교육행정	1,638	-	255	322	1,061
7급	전산	58	-	47	11	-		전산	58	-	47	11	-
	사서	173	-	173	-	-		사서	173	-	173	-	-
	공업	20	-	8	12	-		공업	20	-	8	12	-
	녹지	1	-	1	-	-		녹지	1	-	1	-	-
	보건	31	-	17	14	-		보건	31	-	17	14	-
	간호	5	-	5	-	-		간호	5	-	5	-	-
	시설	48	-	20	28	-		시설	49	-	20	29	-
	시설관리	522	-	20	15	487		시설관리	522	-	20	15	487
	운전	12	-	3	6	3		운전	12	-	3	6	3
	통신운영	1	-	1	-	-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5	-	2	-	3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12	-	4	-	8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143	-	22	33	88		사무운영	140	-	21	33	86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8	-	3	15	-		공업 또는 시설	18	-	3	15	-
	보건 또는 식품위생	2	-	2	-	-		보건 또는 식품위생	2	-	2	-	-

현행							개정안								
구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구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방호 또는 시설관리	4	-	2	2	-			방호 또는 시설관리	4	-	2	2	-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8	-	1	7	-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8	-	1	7	-
	8급	소계	2,091	-	235	220	1,636	8급	소계	2,060	-	230	222	1,608	
		교육행정	1,310	-	67	116	1,127		교육행정	1,289	-	67	118	1,104	
		전산	24	-	13	11	-		전산	24	-	13	11	-	
		사서	85	-	85	-	-		사서	85	-	85	-	-	
		공업	14	-	2	12	-		공업	14	-	2	12	-	
		보건	21	-	4	17	-		보건	21	-	4	17	-	
		시설	50	-	8	42	-		시설	50	-	8	42	-	
		시설관리	551	-	44	6	501		시설관리	547	-	43	6	498	
		운전	12	-	1	5	6		운전	12	-	1	5	6	
		전기운영	3	-	1	-	2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4	-	4	-	-		사무운영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5	-	5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5	-	5	-	-	
		공업 또는 시설	11	-	-	11	-		공업 또는 시설	11	-	-	11	-	
		보건 또는 간호	1	-	1	-	-		보건 또는 간호	1	-	1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9급	소계	-	-	-	-	-	9급	소계	-	-	-	-	-	
		시설관리	-	-	-	-	-		시설관리	-	-	-	-	-	
		운전	-	-	-	-	-		운전	-	-	-	-	-	
		전기운영	-	-	-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	-	-	-	-		사무운영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전문 경력관	소계	7	-	7	-	-	전문 경력관	소계	7	-	7	-	-	
		가군	1	-	1	-	-		가군	1	-	1	-	-	
		비상계획관	1	-	1	-	-		비상계획관	1	-	1	-	-	
나군		2	-	2	-	-	나군		2	-	2	-	-		
교육영상물 제작PD		1	-	1	-	-	교육영상물 제작PD		1	-	1	-	-		
평생교육사		-	-	-	-	-	평생교육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1	-	1	-	-	학생수련지도사		1	-	1	-	-		
다군		4	-	4	-	-	다군		4	-	4	-	-		
속기사		-	-	-	-	-	속기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4	-	4	-	-	학생수련지도사	4	-	4	-	-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연구사	소계		14	-	3	11	-	연구사	소계		14	-	3	11	-
	학예연구		1	-	1	-	-		학예연구		1	-	1	-	-
	기록연구		13	-	2	11	-		기록연구		13	-	2	11	-
별 정 직	별정직 계		8	-	8	-	-	별 정 직	별정직 계		8	-	8	-	-
	4급상당(비서)		1	-	1	-	-		4급상당(비서)		1	-	1	-	-
	5급상당(비서)		4	-	4	-	-		5급상당(비서)		4	-	4	-	-
	6급상당(비서)		3	-	3	-	-		6급상당(비서)		3	-	3	-	-
특 정 직	특정직 계		588	-	273	315	-	특 정 직	특정직 계		588	-	273	315	-
	장학관 · 교육 연구관	소계	123	-	67	56	-		장학관 · 교육 연구관	소계	124	-	68	56	-
		3급 상당	17	-	6	11	-			3급 상당	17	-	6	11	-
		4급 상당	34	-	23	11	-			4급 상당	34	-	23	11	-
		5급 상당	72	-	38	34	-			5급 상당	73	-	39	34	-
	장학사 · 교육 연구사		465	-	206	259	-		장학사 · 교육 연구사		464	-	205	259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2조(직급별정원) ①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직급별정원) ①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 -

2024년 월 일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